발 간 등 록 번 호
11-1051000-000112-09

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-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
-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
2013년부터

이렇게

달라집니다

•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

대한민국정부
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

목 록

◈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◈

1. 세 제 ····· 3

❍ / 3

❍ / 4

❍ / 5

2. 금융 ····· 6

❍ / 6

❍ / 7

❍ 「 」 / 8

❍ / 9

3. 산업(중소기업 · 특허) ····· 10

❍ / 10

❍ / 11

❍ / 12

❍ / 13

❍ / 14

❍ / 15

❍ / 17

❍ / 18

❍ (ATM) / 19

❍ / 20

4. 환경 · 국토 ····· 21

❍ / 21

❍ 「 」 / 22

❍ / 23

❍ / 24

❍ / 25

❍ / 26

❍ / 27

❍ · “ ” / 28

○ / 29

○ / 30

○ / 32

○ / 33

○ · / 34

○ / 35

○ / 36

○ (http://nhf.mltm.go.kr) / 37

○ , / 38

○ / 39

○ / 40

○ / 41

○ · PDF / 42

○ / 43

○ / 44

○ / 45

○ / 46

○ / 47

○ / 48

○ ‘ ’ / 49

○ / 50

○ / 51

○ / 52

○ · · / 53

○ (TPMS) / 54

○ / 55

○ / 56

○ / 57

○ 20 (1) / 58

○ / 59

○ / 60

○ / 62

○ / 63

○ · / 64

○ / 65

○ , / 66

○ / 67

○ · / 68
○ / 69
○ / 70
○ / 71
○ / 72
○ / 73
○ / 74

5. 보건복지 · 여성(법무) ····· 75

○ / 75
○ / 76
○ / 77
○ PC / 78
○ / 79
○ / 80
○ / 81
○ / 82
○ / 83
○ / 84
○ / 86
○ 3~5 全 / 87
○ / 88
○ / 90
○ / 91
○ · / 92
○ / 93
○ / 94
○ / 95
○ · · / 97
○ / 99
○ · / 100
○ / 101
○ / 102

6. 고용노동 ····· 103

○ / 103
○ / 104
○ ( ) / 105
○ / 106
○ / 107
○ / 109
○ ( ) / 110

○ / 111
○
/ 112
○ / 113
○ 4
/ 114
○ / 115
○ · ·
/ 116
○ / 117
○ · / 118
○ / 119
○
/ 120

7. 행정안전(소방·경찰) ····· 121

○
/ 121
○
/ 122
○ / 123

8. 보훈 · 국방 ····· 124

○ / 124
○ / 125
○ ·
/ 126
○ / 127
○ / 128
○
/ 129
○ / 130
○ / 131
○ / 132
○ / 133
○ / 134
○
/ 135
○ / 136
○ A / 137
○
/ 138
○
/ 139
○
/ 140
○
/ 141
○ ·
/ 142
○
/ 143
○ / 144
○ 「
」 / 145
○
/ 146
○ / 147
○
/ 148
○ ( )
/ 149
○
/ 150
○
/ 151
○
/ 152

○ ‘ ’
/ 153
○
/ 154
○ 「 」 3
2 / 155
○ ,
/ 156

9. 교육 · 문화(방송통신) ····· 157

○
/ 157
○ ·
/158
○ 5 3-4
(’13.3) / 159
○ · ·
/ 160
○ / 161
○
/ 162
○
/ 163
○
/ 164
○
/ 166
○ TV / 167
○ ·
‘107 ’ / 168
○ 700㎒
/ 169
○ / 170
○
/ 171

10. 농식품 · 산림 ····· 172

○
/ 172
○ · / 173
○ ‘ ’
/ 174
○
/ 175
○ / 177
○
/ 178
○
/ 179
○
/ 180
○
(’13～’16) ,
/ 181
○
/ 182
○ / 183
○ / 184
○
/ 185
○
/ 186
○ / 187
○
· / 188
○
/ 189

❍ 5 · / 190
❍ / 191
❍ · / 192
❍ · / 193
❍ / 194
❍ / 195
❍ FTA / 196
❍ · · / 197
❍ (, ,) / 198
❍ (3 → 2km) / 199

◈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◈

○ 기획재정부 ····· 203

○ 교육과학기술부 ····· 203

1. / 203
2. · / 203
3. 5 3-4 / 204
4. / 204
5. / 204
6. , / 205

○ 법무부 ····· 206

1. / 206
2. / 206
3. / 206
4. / 207

○ 국방부 ····· 207

1. / 207
2. · / 207
3. / 207
4. / 208
5. / 208
6. / 208
7. / 208
8. / 209
9. / 209
10. / 209
11. / 209
12. / 210
13. A / 210
14. / 210

○ 행정안전부 ····· 210

1. / 210
2. / 211

○ 문화체육관광부 ····· 211

1. / 211
2. / 211
3. / 211

○ 농림수산식품부 ····· 213

1. / 213
2. · / 213
3. / 213
4. / 214
5. / 214
6. / 214
7. / 215
8. / 215
9. / 215

10. / 216
11. / 216
12. , / 216
13. , / 216
14. / 216
15. / 217
16. / 217
17. / 217
18. 5 , · / 217
19. / 218
20. · / 218
21. · / 218
22. / 218
23. / 219
24. FTA / 219

○ 지식경제부 ····· 219

1. / 219
2. / 220
3. / 221
4. / 221
5. / 221

○ 환경부 ····· 221

1. / 221
2. 「 」 / 221
3. / 222
4 / 222
5. / 222
6. / 222
7. / 223

○ 보건복지부 ····· 223

1. / 223
2. / 224
3. / 224
4. PC / 224
5. / 225
6. / 225
7. / 225
8. / 227
9. / 227
10. / 227
11. / 227

12. 3~5 全
/ 228
13.
/ 228

○ 국토해양부 ····· 229

1. / 229
2.
/ 230
3. / 230
4.
/ 230
5. / 231
6. ·
/ 231
7.
/ 231
8.
/ 231
9.
/ 232
10. , / 232
11. / 232
12. / 232
13. / 232
14. · PDF
/ 233
15.
/ 233
16. / 234
17.
/ 234
18. / 235
19.
/ 235
20. / 235
21. / 235
22.
/ 235
23.
/ 236
24.
/ 236
25. · ·
/ 236
26. / 236
27. / 236
28. / 237
29.
/ 237
30.
/ 237
31. / 237
32.
/ 238
33.
/ 239
34.
/ 239
35. · / 239
36.
/ 239
37. ,
/ 240
38.
/ 240
39. · / 240
40. / 241
41.
/ 241

42. / 241
43. / 241
44. / 242
45. / 242

○ 여성가족부 ····· 243

1. / 243
2. · / 243
3. / 243
4. / 243
5. / 243
6. · · / 244

○ 고용노동부 ····· 245

1. / 245
2. / 245
3. ( ) / 245
4. / 245
5. / 246
6. / 246
7. / 246
8. / 246
9. / 247
10. / 247
11. / 247
12. / 247
13. / 247
14. 4 / 247
15. / 248
16. / 248
17. / 248
18. / 248
19. · / 249
20. ('12.11.22. , 12 ,) / 249
21. / 249

○ 방송통신위원회 ····· 249

1. TV / 249
2. / 250
3. 700MHz / 250
4. / 250
5. / 251

○ 국가보훈처 ····· 251

1. / 251

○ 금융위원회 ····· 251

1. / 251

2.
/ 252
3.「 」 / 252
4.
/ 252

○ 관세청 ····· 252

1.
/ 252

○ 병무청 ····· 253

1. / 253
2.
/ 253
3.
/ 253
4.
/ 253
5.
/ 253
6.
/ 254
7. ‘ ’
/ 254
8.
/ 254
9.「 」 / 254
10. / 254
11.
/ 255
12.
/ 255

○ 방위사업청 ····· 255

1.
/ 255
2.
/ 255
3.
/ 256
4. ·
/ 256
5.
/ 256
6. / 256
7.「
」 / 257
8.
/ 258

○ 경찰청 ····· 258

1. / 258

○ 소방방재청 ····· 259

1. / 259
2.
/ 259

○ 산림청 ····· 260

1. / 260
2. / 260
3.
/ 260
4. / 261

○ 중소기업청 ····· 261

1.
/ 261

2. / 261

○ 특허청 ····· 262

1. / 262

2. (ATM) / 262

3. / 262

○ 식품의약품안전청 ····· 262

1. / 262

◈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◈

'12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.

○ / 7

○ / 12

○ / 13

○ / 14

○ / 32

○ (http://nhf.mltm.go.kr) / 37

○ / 41

○ / 52

○ / 60

○ / 91

○ / 106

○ / 119

○ / 120

○ / 138

○ / 146

○ / 147

○ / 148

○ / 151

○ / 152

○ ‘ ’ / 153

○ / 154

○ / 191

○ (3→2km) / 199

'13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.

1월

○ / 3

○ / 4

○ / 6

○ / 9

○ / 17

○ / 18

○ (ATM) / 19

○ / 20

○ / 21

○ / 27
○ · “ ” / 28
○ / 33
○ · / 34
○ / 35
○ / 36
○ , / 38
○ / 43
○ / 44
○ / 45
○ / 47
○ / 48
○ / 50
○ (TPMS) / 54
○ / 56
○ / 57
○ / 65
○ , / 66
○ / 67
○ / 70
○ / 74
○ / 79
○ / 80
○ / 81
○ / 82
○ / 83
○ / 86
○ / 88
○ / 90
○ · / 92
○ / 93
○ / 103
○ / 104
○ ( ) / 105
○ / 107
○ / 109
○ ( ) / 110
○ / 111
○ / 112

○ / 113
○ 4
/ 114
○ / 115
○ / 117
○ · / 118
○ / 124
○ / 125
○ / 128
○
/ 129
○ / 130
○ / 131
○ / 133
○ / 134
○
/ 135
○
/ 140
○
/ 143
○
/ 150
○ · / 158
○
/ 163
○ TV / 167
○ ·
‘107 ’ / 168
○ / 170
○
/ 172
○ · / 173
○ ‘ ’
/ 174
○
/ 178
○
/ 179
○
/ 180
○
/ 182
○ / 183
○
/ 185
○
/ 186
○
/ 189
○ 5 ·
/ 190
○
/ 195
○ FTA
/ 196

2월

○
/ 23
○
/ 24
○ / 25
○ / 71
○
/ 121
○ / 127

○
/ 139
○
/ 141
○ ·
/ 142
○ / 144
○ 「 」 3
2 / 155
○ · ·
/ 160
○
/ 164
○
/ 166
○
/ 171
○
('13~'16) ,
/ 181

3월

○
/ 10
○
/ 72
○ / 76
○ 3~5 全
/ 87
○ · ·
/ 116
○ / 123
○ 「
」 / 145
○ 5 3-4
('13.3) / 159
○
/ 162

4월

○ / 84
○ A / 137
○
· / 188
○ ·
/ 193

5월

○ / 184
○ · ·
/ 197

6월

○ 「 」 / 8
○ · PDF
/ 42
○ 20
(1) / 58
○ / 59
○
/ 62
○ PC / 78
○
/ 94
○
/ 95

○ . .
/ 97
○
/ 99
○ .
/ 100
○ .
/ 126
○
/ 175
○ / 187
○ .
/ 192
○ / 194

7월

○
/ 51
○
/ 63
○ . / 64
○
/ 73
○
/ 77
○ / 100
○ / 102
○ / 136

8월

○
/ 29
○ / 55

9월

○ 「
」 / 22
○
/ 30
○ ‘ ’
/ 49
○ . .
/ 53

10월

○
/ 75
○ 700㎒
/ 169

12월

○
/ 11

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’1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

○
/ 5
○
/ 15
○ / 26
○ / 39
○ / 40
○
/ 46

❍
. / 68
❍ / 69
❍
/ 122
❍ / 132
❍ ( )
/ 149
❍ ,
/ 156
❍
/ 157
❍ / 161
❍ / 177
❍ (, ,
) / 198

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
1. 세 제 ····· 3
2. 금 융 ····· 6
3. 산업(중소기업 · 특허) ····· 10
4. 환경 · 국토 ····· 21
5. 보건복지 · 여성(법무) ····· 75
6. 고용노동 ····· 103
7. 행정안전(소방 · 경찰) ····· 121
8. 보훈 · 국방 ····· 124
9. 교육 · 문화(방송통신) ····· 157
10. 농식품 · 산림 ····· 172

1. 세 제

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

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
(☎ 02-2100-3916)

□□

□

-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

□□□

□□□ □

- □ □□ .

□□□□□

□

- □□ □□ □□

. .

□□

□

<2013년도 지방세 가산세 제도개선>

▸ :

▸

① (20%), (10%), .
(40%)

② . (10%)

③

▸ : 2013.1.(,)

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

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
(☎ 02-2100-3926)

□□ □

□□ □□□□□□

□

• □ □□□□

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 □□□□ □ □

□

□

* 현재 상점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(32개, '12.5월 기준)에 대해서만 75% 적용, 기타(50개) 50% 적용 중

• □□□ □ □

□ □□□

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

• .

□□□□

□□□□ □

□• □□

□□

□

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

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중 기본교육 사전이수 의무 폐지

관세청 수출입물류과
(☎ 042-481-7906)

□□

•

•

<2013년도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이수요건 폐지>

▶ :

▶

①

▶ : 2013 (,)

2. 금 융

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

금융위원회 보험과
(☎ 02-2156-9831)

□□ □□ □□

□ □ □

*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: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80%를 보장(기존 90%, 100%)하는 상품으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가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

- □
  □□□□ □□
- □□□
  □□□□ □□
  □
  □□
- □□ □ □
  □□
  □ □ □□
  □□

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위원회소식〉보도자료〉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
금융위원회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위원회소식〉보도자료〉보험업감독규정 개정

<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>

▸ : ·

▸
①
② ( ) ,
③

▸ : 2013.1.

※ 단, 기존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제도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'13.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

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

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
(☎ 02-2156-9856)

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보도자료〉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등 시행

<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방안>

▶ : ·

▶
① (1~6)

②

▶ : 2012.10.15. (
)

「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」 시행

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
(☎ 02-2156-9475)

□□

□□□

□

- □□

- □ □

□

□□□□ □□ □ □ □□□□

□

※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해당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대부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(다만, 여신금융기관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.)

<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>

▶ :

▶

① 5%

▶ : 2013.6. 12

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

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
(☎ 02-2156-9874)

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〉보도자료〉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

3. 산업(중소기업 · 특허)

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단지제도 개선

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
(☎ 02-2110-5302)

□□ · □□

□

• □□

□□

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

□

• □□□□ □

□

□

<2013년도 산업단지제도 개선>

▶ : · ,

▶

① (2012.12
)

②

(2013.3)

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

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
(☎ 02-2110-5661)

□□

□□

□

• □

□ □□□ □□

□

* 국내 C기업에서 "당" 생산공정 중에 촉매제로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개발(유전자변형미생물 활용 국내 첫 사례), 식약청에 위해**성심사를 요청하였으며, 식약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위해성심사**를 완료하고, 생산승인한 바 있음('11.6월)

• '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 □□ □

.

□□

□

* LMO법 제22조의3(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 :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 또는 신고, LMO법 제22조의4(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) :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

□□ □□

□ □ □□□□

□□

□ □□ □□□

□□

□ □□

□□

□□ □□ □□□

<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>

▸ :

▸

①

② ( )

▸ : 2013.12.

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

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
(☎ 02-2110-5495)

□□ □ □

□□□ □□ □□□

□□

□

- □□□ □□

□□□ □□ □

<2013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>

▸ :

▸

① (

20%→ 25%)

▸ : 2012.11

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

지식경제부 안전품질정책과
(☎ 02-509-7238)

□□

• *

□□

* 리콜이행 실적 : 미국 ('08) 564건, ('09) 466건, ('10) 402건
일본 ('08) 106건, ('09) 94건, ('10) 103건

•

□□

<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>

▶ :

▶

①

②

▶ : 2012.8.24.

우정서비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

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
(☎ 02-2195-1115)

□□

•□ □

*

* 한국우편사업진흥원, 우체국금융개발원, 우체국물류지원단, 우체국시설관리단

•

** 업무위탁 확대 내용

- 공익사업운영, 우체국보험 계약관리,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, 결산 · 회계 등 다수
- 세부내용 :『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』제14조(업무의 위탁) 참고

☞ (관련법령)www.law.go.kr에서 "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" 검색 (제14조)

<우정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 위탁 확대>

▶ :

▶

① * (

**)

* 공익사업운영, 우체국보험 계약관리,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, 결산 · 화계 지원 등

** 한국우편사업진흥원, 우체국금융개발원, 우체국물류지원단, 우체국시설관리단

▶ : 2012.11.6.

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

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
(☎ 042-481-4453)

□□ ·

□□□ □

□

- □□ □□

□□ □□

□

- □□□ □ □□

□

*산학연 첫걸음기술개발 : 국가 R&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지역내 대학·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경우,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(기존 지역사업을 개편)

**산학연 도약기술개발 : 성장정체 또는 혁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도약·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개발 비용을 지원(기존 전국, 국제, 중점,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합 개편)

□□ □□

- · □□ □□□ □

□

□□ □

-

□□ □

□

□□

•

•

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

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
(☎ 042-481-4491)

□□

□□ □□

□

•

<2013년도 협업화 지원사업>

▸ :

▸

① : , , , ,

② : , , , , ,
10~20 ( )

③ : (: 1)
(80%, 20%)

④ : → · → →
→ → →

▸ : 2013.1.

※

□

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

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
(☎ 042-481-5195)

□□

□

- 「□ □□□□ □
」 「 」
. . .
□ □□□ □

※ 중견기업: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소속회사가 아닌 기업

- ’□□□□□□□ □□
□

<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>

▶ : ,

▶
① . .
. 3 30%
② 2013.1.1. ,

▶ : 2013.1.1.

특허수수료 자동납부 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

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
(☎ 042-481-5195)

□□

□

- ‘ ’

□ □□ ‘

’

□□ □□ □□

□

※ (A type) 출원료, 심사청구료, 설정등록료, 연차등록료, 심판청구료 등을 1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
(B type) 4년차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에 자동납부하는 경우

- ’□□□□□□

□

□□ □□□□

□□

- □□□□

□

- ’□□□□□□

□□□□

□

<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>

▶ :

▶

①

② (ATM)

▶ : 2013.1.1.

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

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
(☎ 042-481-8238)

□□

□□

□

•

□□

□

• □□□□□□ □ □□

□ □□

□ □

* 특허청인증서와 동일하게 PCT 인증서도 2013년 1월부터 발급이 중단

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

□

□□□□ □□

‘ ’

□ □ □□

<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>

▸ :

▸

① (’13

)

②

▸ : 2013.1.1.

4. 환경 · 국토

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

환경부 물환경정책과
(☎ 02-2110-6822)

□□

□

- □□□□ □□ □□
□ □□□□

- □□ □□□□□□□
□

<2013년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>

▸ :

▸

① 3 (17 → 20)
- 1,4- , ,

② (TOC)
- .

▸ : 2013.1.

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

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
(☎ 02-2110-6960)

□□□□□□ □ □□ □

□

□

- □ □DNO□□□
  D□NP□□□□□□ □

  □□'□□□□□□□ □

  ※ DNOP(Di-n-Octylphthalate, 다이-n-옥틸 프탈레이트), DINP(Di-isononylphthalate,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), TBT(Tributyltin compounds, 트라이뷰틸주석), 노닐페론(Nonylphenol)

□□□□ DNO□□□ □□□□

□

□□□

* 전이량 : 제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가 경구(빠는 행위), 피부, 흡입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

□□□ □□□□□ □

□ □

□

* 취급제한물질 :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돼 그 용도로의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, 저장,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(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5호)

- □□□

- □

<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>

▶ :

▶

① 4 (DNOP, DINP, TBT,)

- DNOP, DINP : (,) , TBT, :

▶ : 2013.9.27.

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

환경부 교통환경과
(☎ 02-2110-6859)

□□

•

•

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〉법령/정책〉법령정보〉입법·행정예고〉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

<수시점검 개선 주요내용>

▶ : .

, ,

.

▶

① (

)

- : , ( )

- : , ( ) +

( )

▶ : 2013.2.2.

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

환경부 교통환경과
☎ 02-2110-6859)

□□

•

•

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〉법령/정책〉법령정보〉입법·행정예고〉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

<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주요내용>

▶ :

▶

① 2

▶ : 2013.2.2.

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

환경부 교통환경과
(☎ 02-2110-6809)

-

※ 이동오염원 총 배출량의 NOx 34%, PM 43%가 비도로이동오염원 (건설기계, 농업기계 등)에서 배출('09년 CAPSS 자료)

-

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〉알림홍보〉보도자료〉농업기계 배출가스, 2013년 2월부터 단계적 규제 시행

<2013년도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도입>

▶ :

▶
① , Tier-3 ( )
② · (:)

▶ : 2013.2.

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

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
(☎ 02-2110-6778)

□ □□□□□ □□

□

• □

□□□□□

□

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

□

•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

□

※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(대기오염 예측 발표) :
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·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.

<2013년도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 추진>

▸ :

▸

①

② ,

(,)

▸ : 2013 ( )

▸ : 7 2(·)

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

환경부 폐자원관리과
(☎ 02-2110-6943)

□

•

•

□

<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>

▶ :

▶
①

▶ : 2013.1.1.

감정평가의 투명성·객관성 제고를 위한 "감정평가기준" 명확화

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
(☎044-201-3424)

□□

□

- 「 」 □ □□'□□□□□□□□

□ □□ □□

□

□□□□「 」□ □ □'□□ □

·

□□

□□ □□ □

- 「 」 □ □□

'□□□□□□□□ □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보도자료〉①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 ②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 도입

<2013년도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추진 내용>

▶ : · ,

▶

① ( )

② · (( ))*

③ ( )

▶ : 2013.1.1.

* 감정평가 실무기준(안)은 제정추진중으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중('13년초 시행예정)

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

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
(☎ 044-201-3480)

□ □ □□□□

□□□ · □

- □□‘ ’

□ □

□

- 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

□

- □□

□

- 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

□□

·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국토해양뉴스〉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

<2013년도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>

▶ :

▶
①
②
③

▶ : 2013.8. ( )
※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 종합공부 전국확산 실시

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 시스템 도입

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
(☎ 044-201-4651)

□□

•

•

* PPLIS(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,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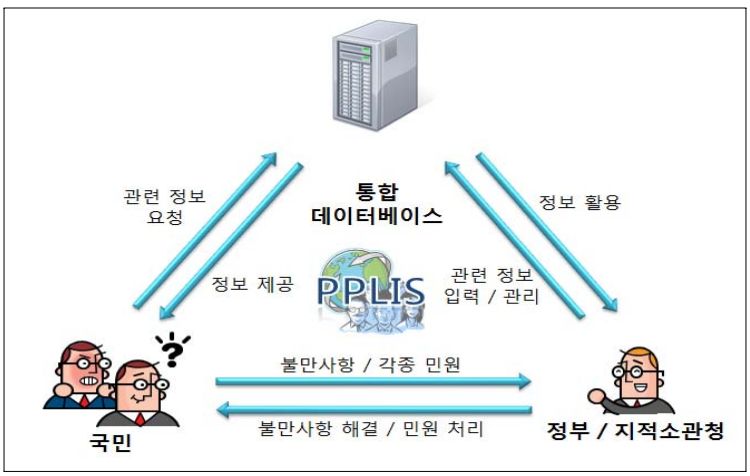

<PPLIS 운영계획 모델>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

<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>

▶ :

▶
①
②

▶ : 2013.9.( )

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□

□□□□□□ □□

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

• .

. □ □□□□□□

□ □□□□□□ . □ □□□□

□□□□□□ □□ □

구 분		변경전	변경후	비 고
		4.0%	3.7%	< >
		5.2%	4.3%	- (1.0→0.5%), .
		4.2%	3.8%	. (0.5→0.2%) ( )
		5.0 ~ 6.0%	3.8 ~ 4.0%	4.8%(60㎡)
		3.0 ~ 4.0%	2.7 ~ 3.7%	2% ('13)
		3.0%	2.7%	-

• □' ' □□

□□□□□ □

구 분	가입기간 1년미만	1년이상 2년미만	2년이상
	2.5%	3.5%	4.5%
	2.0%	3.0%	4.0%

* 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 개정(12.21) *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

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

<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>

▸ :

▸

① . (4.0%), (4.2%), . (5.2%) 0.5%p

② ( ) 0.5%p

▸ : 2012.12.21.

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□

·

·

•

•

〈국민주택기금 자금별 대출 소득요건 조정〉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	3 * 3 5	( ) 4 * 4 5
	3 * 4	( ) 4 * 5
	5	( ) 5 5

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

<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>

▶ :

▶

① ·

·

▶ : 2013.1.2

소형·저가주택의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□□□□□□ □

□

- * **□ · **□

□

* 가점항목(84점) : 무주택기간(32점), 부양가족수(35점), 입주자저축 가입기간(17점)

** 무주택 인정기준 : 전용60㎡이하 +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+ 10년이상 보유

- □'□ '

□□'□□ '□ □

□ □□□□

□□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<소형·저가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>

▶ : ·

▶

① ·

• ( ) 5 →7 , ( ) 10 →

• ( ) 60㎡ →

▶ : 2013.1.(,)

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□

•

*

**

* 착오기재 사례: 청약순위, 주택소유여부,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, 재당첨제한 등

•

□

* 당첨은 취소하되, 당첨사실을 삭제하고,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, 다만, 일정기간 청약제한(당첨일로부터 1년(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2년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<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>

▶ :

▶

①

②

▶ : 2013.1.(,)

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□ ‘ ’

- ‘ ’

- ‘

’

□

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<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>

▶ :

▶

①

,

▶ : 2013.1.(,)

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(http://nhf.mltm.go.kr) 서비스 개시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□ 「
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」
□

• □□ □□

「 」
□

□ ·
□□

□

• 「 」

□

□ □□ ·
·

□

•

□□

□

• □□ □ □□ □□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국토해양뉴스〉보도자료〉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

<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서비스 개시>

▶ :

▶
① , ,
「
」

▶ : 2012.12. (http://nhf.mltm.go.kr)

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

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
(☎ 044-201-3369)

□□ □

- □□□

□

□□ □□

□

□□ □ □□□

□□

□ □□□ □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국토해양뉴스〉보도자료〉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유 크게 확대

<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서비스 개시>

▸ : ,

▸
① 500 .
( )
② (, 2)

▸ : 2013.1.(,)

공동주택 주민공동 시설 총량제 도입

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
(☎ 044-201-3367)

□□

□□

•

□□ □□

□□ □□

□ □ □□□ □□

□

* 예 : 주민운동시설(실외)은 인근 동(棟)에서 소음민원 등이 빈번히 발생, 작은 도서관은 방치되거나 독서실 등으로 활용

□□ □□

□

□□

□ □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국토해양뉴스〉보도자료〉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 기준 전면개편

<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>

▶ : .

▶

① ,

▶ : 2013 ( )

※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중

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

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
(☎ 044-201-3367)

□□

□

- □□

□□

□

□□ □□

□□□ □ □□ □□

□

- □□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국토해양뉴스〉보도자료〉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 기준 전면개편

<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>

▶ :

▶

①

▶ : 2013 ( )

※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중

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

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
(☎ 044-201-3392, 3386)

□□ □ □

□

- □□□□ □ □□ □ ’□□□□□ □□
  □
  □
  □
- □□□□ □□ □□

□ □

□

□□□□□□□ □□ □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,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

<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>

▶ :
,
,

▶
① 2014 12 31
(( ) 4
)

▶ : 2012.12.18.

지도·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

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
(☎ 031-210-2720)

□□ □□

□□□□□ □□

- □□□□□□

□□

□

- □□ □□

□

□

- □□□□ □□□

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

□□

□□ □□ □□□□□□

□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국토해양뉴스〉보도자료〉등산로·자전거길 "나만의 맞춤지도" 만든다.

<지도·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>

▸ :

▸

① PDF ,
2013 (1/5,000)
② (S/W)

▸ : 2013.6.

감리전문회사의 입찰 부담 완화 및 선정 기준의 공정성 제고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
(☎ 044-201-3581)

□□

□□

□

•

□□□·

□□□

□

□□ □□ □□□

□□ □□□□ □□

□ □□ □ □□

□

• □□

□□

□□

□

□□

□□□

□ □

□□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

<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감리전문회사 PQ기준 주요개정>

▸ : PQ , ,

▸

① ,

② PQ

(2 →4)

▸ : 2013.1.( ), 2013.4.(PQ)

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
(☎ 044-201-3581)

□□

□□

□

•

□□ □□

□□ □ □□

□

□□ □□

□

• □□ □□□

□□

□

□□ □□

.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

<건설공사 감리대가 일부개정 주요내용>

▸ :

▸

①

②

▸ : 2013.1.

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
(☎ 044-201-3577)

□□

□□□□

□

□□

□□ ·

□

•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훈련·예규·고시〉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

<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주요개정>

▸ :

▸

① ② ·

③

▸ : 2013.1.

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

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
(☎ 044-201-3689)

□□ □ □

□

- *

□ .

□□ □□ .

□

* 경제자유구역, 제주특별자치도, 기업도시(전문대학 이상으로 한정) 등

-

- □

□ □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

<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>

▶ :

▶

①

▶ : 2013

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

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
(☎ 044-201-3691)

□□

□□□

□

- □□□□

□

□□

□□□□

□□

- □□□

□

☞ 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

<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>

▶ : 20%

▶

① 20%

5%

▶ : 2013.1.1.

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

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
(☎ 044-201-3691)

-

-

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보도자료〉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

<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>

▶ :

▶
① 12.5%

▶ : 2013.1.1.

새만금사업을 총괄할 '새만금개발청' 신설

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팀
(☎ 044-201-3696)

□□

□□ □

* 새만금사업은 '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(Master Plan)에 따라 30%를 농지로, 70%를 산업·관광·과학연구·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

□□ □ □

· · · · · □

□□

□

□ □ □ □□□□ □ ' '

□

- □

□

- · · □

□□ □□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〉 정보마당 〉 법령정보 〉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<새만금 사업추진 전담기구 설립>

▸ :

, ,

『 』

· 172

('12.11.22)

▸

① , ( )

②

▸ 시행일 : 2013.9.11.

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

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
(☎ 044-201-3751)

□□

□ □

- □□

□□ □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도시공원법시행규칙

<도시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>

▶ :

▶
① ,
② .

▶ : 2013.1

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

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
(☎ 044-201-3751)

□□□□ □□

•

•

※ (민간공원제도) 10만㎡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80%이상을 기부 체납하는 경우 20%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허용(도시공원법 제21조의2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도시공원법시행규칙

<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 내용>

▶ : 10 ㎡

▶

•

☞ (현행) 토지면적 2/3 소유, 토지소유자 1/2 동의 → (개정) 기존 요건에 '공원조성비 4/5 예치' 요건 추가

▶ : 2013.7

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반품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

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
(☎ 044-201-3843)

□□ .

□

•

□□

□□□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

□□

• □□□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자동차관리법

<반품차량 판매시 고지의무 신설>

▶ :

▶
①

* 고지의무자 : 자동차 제작·판매자 등
② 100

▶ : 2012.12.18.

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·정비·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

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
(☎ 044-201-3844)

□□ · ·

□ □

□□

□

• □□ □□

□

□ □□□□ □

□□□ □ □

□

• ·

□□

·

□□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자동차관리법

<자동차 정비내역 등 통지의무 신설>

▶ :

▶

① · ·

* 전송의무를 위반하여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▶ : 2013.9.1.

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(TPMS) 설치 의무화

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
(☎ 044-201-3851)

-

-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<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>

▶ :

▶ ① 3.5 , ,

▶ : 2013.1.

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

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
(☎ 044-201-3851)

□□

□

•

□ □□ □□□

□□□

□

•□

□□

□□

□□□□□□ □□□ □ □ ’□□□□□□□

* 최고속도제한장치 : 승합차(110km/h), 화물자동차(90km/h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<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 확대>

▶ :

▶

①

▶ : 2013.8.16.

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

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
(☎ 044-201-3851)

□□

□ □ □

•

□□□□

□□

□□□□□□ □

□□

•

□□

□□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<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>

▶ :

▶

①

▶ : 2013.1.1.

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

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
(☎ 044-201-4602)

□□

□□

•

□□□□□□ □ □

□ □ □

□□□□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보도자료〉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

<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>

▶ :

▶

①

-

50%

▶ : 2013.1.1

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(1회 연장)까지 국유지 임대

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
(☎ 044-201-4177)

□□ □□ □□ □

□

•

□□ □□

□

•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항만법

<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국유재산 임대 특례 마련 내용>

▶ :

▶
① 20 (1)
②

▶ : 2013.6.

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

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
(☎ 044-201-4145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항만법

<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절차 개선 내용>

▶ :

▶

①

② 20

▶ : 2013.6.

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기준 신고제도 시행

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
(☎ 044-201-4003)

□□

□

국제물류주선업 :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"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·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"으로 정의하고 있으며, 일반적으로 '포워딩(forwarding)' 업이라 부름

- □

□

□□ □ □

□□□□ □ □□

□□

- □□

□□ □ □□□□ □ □

□□ □□ □□ □□ · ·

· · □□ □□

□

□□ □ □ □□

□

- 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

□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물류정책기본법

<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신고제도 개편>

▸ :

▸

① (3)
② (→)
③ (30 → 60)
④ · , , , (15 → 30)
⑤ (6 → 1)
⑥
⑦ · (Apostille)

▸ : 2012.12.3. ('12.12.3)

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
(☎ 044-201-4007)

□□ □□□ · □ ·

□ □

□ □

•

「

□ 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주요 사항>

▸

①

②

·

③ ·

④

⑤ · ,

▸ : 2013.6.

*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('12.10)

복합물류터미널 등록 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☎ 044-201-4007)

□□ □□□

. □

□□ □

※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('12.12월 개정안 국회제출)

• □□ □

□ □□

□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등록 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주요 사항>

▶

•

. ( )

-

,

▶ : 2013.7. ( )

* 개정법률안 입안('12.12~)

과징금 · 벌금 병과 제도 개선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
(☎ 044-201-4007)

□ □

□ □

- □

※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('12.12월 개정안 국회제출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과징금 · 벌금 병과제도 개선 주요 사항 >

▶

•

,

- 1
- 1 3

•

▶ : 2013.7. ( )

* 개정법률안 입안('12.12~)

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
(☎ 044-201-4011)

□ □ □ □

□

•

* '12.12월현재 물류창고업 등록현황(3,612건) : 수도권 1,570건, 지방 2,042건

•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서비스 실시>

▶ :

▶

① (2012 11)

▶ : 2013.1.

*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애 관련 법률 개정('12.8.4.)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물류창고업등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('12.11)하고, 1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'13년 1월부터 정상 운영

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

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
(☎ 044-201-4018)

□□

□

- □□

□□

□□ □ □ □

□□□□□ · □□□□

□

- □□

□

□□ □□□□'□□ □□□□□

'□□ □□□□ □

- □□

□

□□

□

□□ □□ □□

□

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)정보마당)법령정보)화물자동차 운수사업

<2013년도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>

▶ :

▶

① ,

▶ : 2013.1.1.

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

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
(☎ 044-201-4022)

□ □ □ □’□□□□□□□ □

•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화물자동차 운수사업

<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>

▶ :

▶

① “ ” ,

“ ”

▶ : 2013.1.1.

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·폭을 변경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
(☎ 044-201-4349)

□□ □ * □□ □

□□□□ □

* 항공기 크기란 해당 헬기장에 사용 예정인 가장 큰 회전익항공기의 주 회전날개를 포함한 전체 길이와 폭 중 큰 값을 말함

- □

□

-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항공법

<헬기장 활주로 크기 변경>

▶ :

▶

① (A~D)

② 1.2

15m

▶ : 2013.1.( )

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
(☎ 044-201-4349)

□□

- □□ .

-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항공법 시행규칙

<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폐지>

▶ : ICAO .
,

▶
① .

▶ : 2013.1.( )

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
(☎ 044-201-4350)

□□

□□

•

□

□□ □□ □□

* 인천, 김포, 김해, 제주, 청주, 군산, 무안, 광주, 여수, 원주, 양양, 대구, 울산, 포항, 사천공항

□□□□

□□

• □□ □□ □□

□□ □□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자연재해대책법

<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>

▸ :

15

▸

① (15

)

②

▸ : 2013.1.

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
(☎ 044-201-4355)

□□ ’□□□□□□□□

•

□□

* “공항운영증명”은 공항운영자가 인력, 시설, 장비 및 운영절차 등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임

□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항공법 시행규칙

<공항운영자 신설>

▶ :

▶

① 「 」, 「 」

②

.

▶ : 2013.2. ( )

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
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
(☎ 044-201-4377)

□□

□

• □□□□ □ □

□

□□ □□□□ □□

□ □□□□□□ □ □□□□ □

□ □□□□ □

□

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

<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>

▸ :

▸

① (, 3
100%, 2 50%)

②

▸

① : 2013.1.

② : 2013.3.

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

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
(☎ 044-201-4422)

□

• □ □

□ □ □

□ □

* '10년도 COD 배출량은 7,761.7kg/일, TP는 203.11kg/일이며, 총량관리 미시행시 '17년도 COD 배출량은 8,703.5kg/일, TP는 251.54kg/일임

□ · · · □

□ □

□ 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시화호 총량관리 시행

<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>

▶ :

▶

① : , / '13.7.1~ '17.12.31

② : (· · ·) 482.94km2

③ : (3.3mg/L), (0.065mg/L)

④ : (7,241.3kg/), (193.00kg/)

⑤ : (1,462.2kg/), (58.54kg/)

▶ : 2013.7. ( )

※ 2012년 12월까지 「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」 수립 예정

육상 발생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대상 폐기물 축소

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
(☎ 044-201-4427)

□□

□

• □ □ □□ □

□□ □ □

□ □

*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(음폐수), 분뇨, 분뇨오니, 폐수, 폐수오니, 수산가공 잔재물, 원료용 동·식물 잔재물, 준설토사, CO2 스트림

• □□

□□□ □□□□

□□□□

□□

* 배출해역은 한·일, 한·중 공동 어업수역에 위치하고 있고 분쟁소지가 있음
** 런던협약/의정서에서는 음폐수, 분뇨, 폐수는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
*** 런던협약/의정서 가입국 중 유기성오니를 해양에 배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함

•

□□□ □□

□

* 가축분뇨, 하수오니 : '12.1.1부터 해양배출 금지 (완료)
* 산업폐수, 폐수오니 : '14.1.1부터 해양배출 금지 (예정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해양환경관리법

<육상 발생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대상 축소>

▸ :

▸

①

② '13 .

▸ : 2013.1.1

5. 보건복지 · 여성(법무)

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
(☎ 02-2023-7418, 8756)

□□

□□

•

□ 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

□□ □□

• □□ □□

‘

’ □□□□ □□ □

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

□□□□ □ □□□

□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보도자료〉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

<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>

▸ : 「 」

▸

① ( ) (50% → 5%)
② (TS-1) (100% → 5%)
③ (→)
④ (→)

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

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
(☎ 043-719-7369)

□□ □□

□ □

- □□□□ □□ □
□□
□□□□ □ □ □
□

- □□□
□□□□ □

□

☞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(http://nip.cdc.go.kr)

<2013년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>

▸ : 65

▸

① Hib(b)
(→ 5)
※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추가 지원으로 무료접종 가능(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)

② 65
(→)

▸ : 2013.3.(65 5)

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
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
(☎ 02-2023-8257)

□ □

□□□ □□□□

□□□ □□ □

□

• □ □ □□ □

□

□□ □□□□ □ □

□□

□

• □□ ‘ ’

□ □□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보도자료〉의료급여제도 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

<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>

▶ :

▶

① (107 →144)

②

(5 /)

▶ : 2013.7 ( )

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

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
(☎ 02-2023-7848)

□□

□□□ □ □□ □

- □□

□□□ □

□□

□

- □□ * □

□□

*

,

.

☞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 '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운다

<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>

▶ :

▶

① , ,

PC

▶ : 2013 6 8

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

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
(☎ 02-2023-7785)

▣

.

•

100

’13 1 1 .

- , ( )

,

.

-

100 1

.

• 150㎡ (45)

(8)

. (’13 1 31

, ’13 4 30)

- (5) ,

( )

( ) .

☞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음식점 메뉴판, 소비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

<음식점,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>

▸ :

▸

① 100

② (: 150㎡

)

▸ : 2013 1 (’13 4 30

)

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

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
(☎ 02-2023-8672.8654

▣ 2013 (
.) 2012 55.1 (88.1) 58
(92.8) 3 .

• 2012 43 2013 45 .

▣ , 2013 1

• 2

.

< >

▸ :

▸

① : ’12 55.1 (88.1)
→ ’13 58 (92.8)

② : ’12 43 →
’13 45

③ : ‘12 2

* 기초 : (18~64세) 6만원→8만원 / (65세 이상) 15만원→17만원
* 차상위: 5만원→7만원
* 차상위 초과 : (18~64세) 0만원→2만원 / (65세 이상) 2만원→4만원

▸ : 2013 1 1

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 및 급여 확대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
(☎ 02-2023-8204)

□□

□ □

• □

□□ □□□□ □

□

• □□

□□

□□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보도자료〉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

<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>

▸ : 2

▸

① (1 → 2)

②

- ( ) : 35~86 → 361~886
- ( ) : 35~52 → 361~886
- : 83~664 → 86~684

* 최중증 1인가구 기준 완화 및 가족의 결혼·출산·입원 등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에 따른 추가급여 신설

③

- / · : 8,300 /9,300 →8,550 /10,260

④

- / : 4,000 / · → 6,000 / · ·

▸ : 2013.1.( )

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
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
(☎ 02-2023-8184)

□□

□

- □□
  □□□□

- □□□□ □ □□

□□

<2013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내용>

▶ :

* 외국인도 장애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등록제도 개선권고 (인권위, '08.7.15)
* 외국인 지위·차별 개선 등 외국인 장애인 차별시정 과제 추진(국무조정실, '07.12.5)
* 2010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(법무부)

▶ :

①

②

- 6

- 31
  10 1

- 2 3

*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

▶ : 2013.1.27.

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
(☎ 02-2023-8667)

□□ □ □

□□□□ □ □

- □ □□□□□ □

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

□

-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

□

- □□ □□

□

<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>

▸ :

▸

① (100% → 150%)
② (31→40)

▸ : 2013.1.(,)

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기관 확대

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
(☎ 02-2023-8640)

□ □ □

• □□□□ □ □□ □□ □□

□□ □□ □ □□

□

□

□□ □□

□ □ □□□

□□ □□ □□ □

□□

•

□□

<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사항>

▸ (14 , 8)

- .
- .
- ,

.

▸ (11 , 5)

- .
- .

▶ · (21 , 14)

- ·

- ·
(7)

· , , , ,
, , , ,
, , , ,
, ,

▶ : 2013.4.11.

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

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
(☎ 02-2023-8483)

□□□□□□ □

□ □□□□ □

□

• □ □

□□□ □□ □ □□□ □□

□□□□ □ □□□

□

□□ □□ □

□ □□□□ □

□

<2013년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>

▸ :

▸

① (4 : 100 → 180)

*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유지

* 인공수정은 '12년과 동일하게 3회까지 50만원 범위내 지원

▸ : 2013.1.

만 3~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

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
(☎ 02-2023-8926)

□□ □□□

.

- □□□□ □ ‘□ ’ □□□□ □ □□□ □□

□□□□ ’ □□□

□

- .

□□

□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〉정책소개〉영유아보육〉3-5세 연령별 누리과정

<만 3~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>

▶ : “ ”

▶

① ( )

② . (70% → 全)

※ 22만원('13년) → 24만원('14년) → 27만원('15년) → 30만원('16년)

▶ : 2013.3.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
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(☎ 02-2023-8128)

□□

•

□□□□ □ □ □ □ □□□□

□

* 대도시 133백만원→ 228백만원, 중소도시 108.5→136백만원

• □□

□□□□□ □ □□□□□□

□

□□

□

• 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

□□□□ □□ □

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

•

□□ □□ □

•

□□ □□□ □ □

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 □□

□□

□

•

·

□ □□

□

•

□□ □

□□

□□□ □

<2013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완화 사항>

▶ :

▶

①

② (4.17%/ → 1.04%/)

③ 3.4%

④ (50 →75)

⑤

⑥ (·)

⑦ 30%

▶ : 2013.1.(,)

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통합 운영

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
(☎ 043-719-2257)

□ □ □□□□

□

- □

□□□ □ □□□ □

□ □□□□□ □

□

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

□

- *

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

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

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

□

* 부작용 추정사례란 소비자가 신고한 주관적 증상으로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님

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

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
(☎ 02-2075-8613, 8617)

□□ □ □

“ ”

□□□□ □

- □□ □□
□□
□□DHD□□ □
□□ ~□□ □ □
- □ □ □□□
□□ □□ □□ □□
□□ □ □
□□□ □□
- □□ □ □ □
□□ □
- □□ □□ □□ □□
□

*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연락처 :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13번지, 031)333-1900

☞ (참고)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(www.nyhc.or.kr)

<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>

▶ : ·

▶

① : , , ADHD ·
9 ~18

② : , , ,

③ : 30 ( ),

④ : , , , ,

▶ : 2012.12.17.

청소년지도사 · 청소년 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

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
(☎ 02-2075-8614)

□□ □ □

□□□□ □ □

□

- · □□ □□

□ □□ □

- □□ □□ □□

□

□

- □□

·

·

□□□□□ □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〉 '청소년기본법'

<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>

▶ : .

▶

① . , ,

2 20

② , , ,

8

▶ : 2013.1.1.

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

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
(☎ 02-2075-8713)

-

-

〈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지원단가 확대 추이〉

구 분	'05년	'08년	'09년	'10년	'13년
	6	8	10	12	12
	5	5	5	5	7

<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>

▶ :

▶
① 12
5 7

▶ : 2013.1.1.

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기관 확대

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
(☎ 02-2075-8766)

□ □ □ □□□□

□ □□

•

•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〉 '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'

<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>

▶ :

▶

①

* (종전) 어린이집, 유치원, 각급학교 → (확대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추가

②

▶ : 2013.6.19

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

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
(☎ 02-2075-8768)

□

•

•

□

□

•

•

•

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〉뉴스·소식〉보도·해명〉보도자료〉 '성폭력피해자 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'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〉 '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'

<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>

▶ :

.

▶

① (2012.10.25)

- 500

-

* (현행)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 → (확대) 모든 피해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 및 자매, 배우자 및 보호자

② (2013.6.19)

'12년	'13년 6월~
· : 6 * 1년6개월 범위 내 연장 *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만 18세까지 연장 가능	① : 6 (1 6 1) ② : 2 ( ) ③ ( ) : 19 (2 1) ④ : 2 (2 1) ⑤ : ④

③ (2013.6.19)

- : , , ,

- : . .

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· 관리 강화

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
(☎ 02-2075-8783)

□ □ · □ □□□□ □

□□ □ □

□□ ·

• □

□ □□

□□ ·

□

〈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주요 형량 강화 내용〉

조항	내용	현행	개정안
7 (아동·청소년 강간·강제추행 등)		5 3 1 5 ~2 5	5 5 2 , 1 ~3 5
11 (아동·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·배포 등)	□ □ □	7 3 2 2	10 7 5 1 2
13 (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)	□	1 10 5 3	3 1 ~10 2 ~5

•

* 현행 : 성명, 나이, 주소(읍·면·동), 신체정보, 사진, 성범죄 요지

•

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〉뉴스·소식〉보도자료〉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통과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〉 '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'

<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·관리 강화>

▶ : ·

▶

① (,)

② (5 → 5 , 3 → 5 , · · · 5 → 5)

③ (13 , → 13 ,)

④ (·)

⑤ ·

⑥

- ( ) ' · · '→( ) ' · · '

- , (PC), , ,

⑦ (, ·)

⑧ (,)

▶ : 2013.6. (, 2012.12.)

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시행

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
(☎ 02-2110-3648)

□□□□□□

- □□ □

- □□□□ □ □

- □

- □□

☞ (참고)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인권관련뉴스〉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 도우미!!법률조력인

<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>

▶ :

▶
① ,
② , ,
③ ,
.
④

▶ : 2013.6.19(「 」)

성폭력 피해 아동·장애인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

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
(☎ 02-2110-3852)

□□ □□

□

- .

□□□□ □ □

□

□□ □□□□ □

. □

-

□

□

☞ (참고)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인권관련뉴스〉 '진술조력인 제도 도입!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전면적 확대!'

<진술조력인 제도>

▶ : .

▶
①
②

③

▶ : 2013.6.19
※ 2012년 11월 현재 예산 심의중으로 시행 시기 변경 가능
※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인 배치 및 활동 시작

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

법무부 법무심의관실
(☎ 02-2110-3164)

□□‘ ’□

□□

•

□

□□

□□

※ 가족관계등록예규, 판례(94다1302)에 따르면,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친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됨

□□ □□□□ □

□

•□

□□ □□ □□ □□

□□

□□

□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

<2013년 친권제도의 개선>

▶ :

▶ :

①

②

③

▶ : 2013.7.1.

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

법무부 법무심의관실
(☎ 02-2110-3164)

□□

□

□□

•

□□

□□ □□□□ □ □

□□

□□ □□ □□

□□

• □□

□

□□ □□

• □□

□□

□ □□ □

□□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

<2013년 개정된 입양제도>

▶ :

▶

①

②

③

▶ : 2013.7.1.

6. 고용노동

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 확대

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(☎ 02-6902-8474)

□□

□

• ‘ ’□ ‘ . ’□ □□

□□ □□□ □□

• □□□□ *□ □□

□□ □□ □

* 신성장동력 산업

녹색기술산업	①신 · 재생에너지, ②탄소저감 에너지, ③고도 물처리, ④LED 응용, ⑤그린수송시스템, ⑥첨단 그린도시
첨단융합산업	⑦방송통신융합산업, ⑧IT융합시스템, ⑨로봇 응용, ⑩신소재·나노 융합, ⑪바이오제약(자원)·의료기기, ⑫고부가 식품산업
고부가서비스산업	⑬콘텐츠·소프트웨어 ⑭글로벌 헬스케어 ⑮글로벌 교육서비스 ⑯녹색금융 ⑰MICE·융합관광

** 국내복귀(U턴) 기업: 해외에서 2년 이상 현지 생산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던 기업 중,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로서,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기업

<고용창출지원사업의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>

▸ :

▸

① 17 10 (2)

② (U)

③ : 1 1 720 (2 , 20)

▸ : 2013.1.1.

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

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
(☎ 02-6902-8474)

□□

□□ □ □

- 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

□ □

-

□□

<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>

▸ : ,

▸

① 6 3

②

▸ : 2013.1. (·)

(예비)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비율 변경

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
(☎ 02-2110-7172)

□□□ □ □□□□

□□

- □□□□

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

- □□□□ □ □□□□□ □ □□□□□ □

□□□ □~3년차 하향됩니다.

※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원비율은 1년차 100%, 2년차 90%로 2012년도와 동일합니다.

<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>

▸ : ( ) 2013

▸

①

2012 : 1 90%, 2 80%, 3 70%

2013 : 1 90%, 2 70%, 3 50%

▸ : 2013.1.1.

□

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(☎ 02-2110-7306)

□□

□

- □□□□ □□
  □□□ □ □□□

□□

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
□□□□□

□

현행	개정		
30%			
50%	100	100	15
30%	100 300	100	10 + 5
25%	300	100	5 + 20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e고용노동뉴스〉보도자료〉고용노동부,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죈다

<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별 차등화>

▸ :

▸

① 100

② 100~300 10%+5 ,
300 5%+20

▸ : 2012.12.

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(☎ 02-2110-7313)

□

•

•

〈현행: 3단계 〉 〈 변경: 4단계 〉

산정기준	부담금
1/2	(1 59)
1/2	+ 1/2 (88 5)
	(95 7)

⇨

산정기준	부담금
3/4	(1 626,000)
1/2~3/4	+ 1/4 (782,500)
	+ 1/2 (939,000)
	(1,015,740)

*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

□

※ 공공기관 · 300명 이상('11.7.1.) → 200명~299명('12.1.1) → 100명~199명('13.1.1)

☞ (참고) 전자관보(http://gwanbo.korea.go.kr)〉관보 구분별 보기〉고시

<장애인 고용부담금 세분화>

▶ :

▶

① : 3/4
, 1/2 ~3/4
+ 1/4 , 1/2 +
1/2

②
100
※ 공공기관 · 300명 이상: '11.7.1.부터, 200∽299명: '12.1.1부터, 100∽199명: '13.1.1부터

▶ : 2013.1.1.

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(☎ 02-2110-7307)

□□□□□□

□□

• · □□□ □□ □□

□□

□□ □□□□□□□ □□

□ □ □

<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>

▸ :

,

▸

① : ( ) ·
( ) 50 ,
,

② : 40 ,
1 5

③ : 1 ∽ 2

▸ : 2013.1.

※ 방학을 이용하여 기업연수제를 실시할 예정이나, 기업과 학생의 수요에 따라 연중 상시 운영 예정

특수학교(급)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 실습 훈련 지원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(☎ 02-2110-7307)

□ □ □□□□

□

- □ □□□ □□□

□□

□□ □ □□□□□□ □□ □ □

□□□□□□ □

- □□

□

<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>

▸ : ( )

▸

① : 3,
② : (4)
③ : 3~6
④ : (1 12,000), (1 1 17,650)

▸ : 2013.1.

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(☎ 02-2110-7307)

□□ □□□□ □

□□□□

□

•

□□‘ ’ □□ □□

□

□□ □ □ □ □

□ □ □□

□□

□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e고용노동뉴스〉보도자료〉고용노동부, 장애학생,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

<워크투게더 센터 전국 확대 운영>

▶ : .

▶

① : ( ), ,

② : , , ,

, , ,

▶ : 2013.1.

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
(☎ 02-2110-7305)

□□

□

•

□□□ □□ □□

□□□ □□□

□□

□□ □□ □□

□□ □□□ □□□

□

<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소정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감액률 요건 조정>

▸ :

▸

①

50% ,

15 30

② 50% 30%

▸ : 2013.1.( )

※ 개정안 입법예고중

최저임금액 인상

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
(☎ 02-2110-7399)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e-고용노동뉴스〉보도자료〉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,860원으로 결정

<최저임금액 인상>

▶ : ’12.8.1.

▶ : 4,860

▶ : 2013.1. ~ 12.

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 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

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
(☎ 02-2110-7419)

□□□□□□ □ □ □ □

□□

• □□□□ □□ □ □

□□

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
* □□□ □□□

□□□□□□□ □ □
□□□ □□□□

*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8조제1항의 "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"을 의미함

• □□□□□□□

□ □ □□

□□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팜플렛·브로셔

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

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
(☎ 02-6922-0914)

☞ 「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(http://kras.kosha.or.kr)」 참조('13. 1. 1. 오픈 예정)

안전인증 ·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 기계 · 기구 확대 조정

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
(☎ 02-6922-0935)

□□□□□□ □ □ □ □ □

□

▯

•

□ ▯▯ ▯▯

▯ ▯▯ □ ▯▯ ▯▯

▯▯ ▯▯ **▯

▯

▯▯ ▯▯

□

▯

* 안전인증: 기계 · 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

** 자율안전확인신고: 기계 · 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e-고용노동뉴스〉보도자료〉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 · 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

<2013년도 안전인증 ·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확대>

▶ : · · ·

▶

① (8 → 11)

② (3 → 13)

▶ : 2013.3.1.

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

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
(☎ 02-6922-0951)

□□□□

□□□

□□ □□□

- □□ □□

□□

□

<2013년도 재정지원사업 개요>

▸ :

▸

① 10

② 1,000 (

·)

▸ : 2013.1.

석면해체·제거작업 안전성 평가

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
(☎ 02-6922-0953)

□ □ 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

.

□□ □ □

□ 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

• □□□□□ .

□□□□□□□ .

□□ □□□□□ .

□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석면조사 및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(고시 제2012-9호)

<석면해체·제거업자 안전성평가 평가>

▶ : .

▶

①

② ,

▶ : 2013.1.

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(☎ 02-2110-7219)

-

-

-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최근 제·개정법령

<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>

▶ :

▶
① (18 → 19)
② (60 →)

▶ : 2012.12.18

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(☎ 02-2110-7223)

□□ □□ .

□

- □□

- □

□□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e-고용노동뉴스〉보도자료〉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

<2013년도 산재보험 가입확대 내용>

▸ :

▸

① :『 』 2

. .

② : ( ) ☞

( ) ☞ ( ) ☞

*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의 보험사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 기관에 위탁 가능

▸ : 2012.11.18.

7. 행정안전(소방 · 경찰)

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시행

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
(☎ 02-2100-5338)

□□

•

•

<2013년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>

▸ :

▸

① 1 1 (1)
② 2
③ 1 1

▸ : 2013.2.23.

* 5개 업종 : 휴게 · 일반음식점, 게임제공업, PC방, 복합유통게임제공업

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

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
(☎ 02-2100-5316)

□

• □□□□ □□ □□

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

•

□ □ □□ □

□

•

□□ □ □ □□ □□ □

□□ □ 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

□□ □□ □

<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>

▸

① : 30 → 40

②

• ( ) , , , ,

• ( ) < 3> , ,

< 2> , , ,

, , 中 2

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

경찰청 생활질서과
(☎ 02-3150-1355)

□ 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 □□

□□ □ □□ □□ □

□

- □ □

□□ * □□□□□□□□□

□ □ □□

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

* 〈 28개 항목 〉

① 빈집등에 침입, ② 흉기 은닉휴대, ③ 폭행 등 예비, ④ 거짓신고, ⑤ 시체 현장변경 등, 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, ⑦ 관명사칭, ⑧ 마시는 물 사용방해, ⑨ 의식방해, ⑩ 타인의 가축·기계 무단조작, ⑪ 위험한 불씨 사용, ⑫ 거짓 인적사항 사용, ⑬ 자릿세 징수 등, ⑭ 총포 등 조작장난, ⑮ 장난전화 등, ⑯ 지속적 괴롭힘, ⑰단체가입강요, ⑱과다노출, ⑲지문채취 불응, ⑳무임승차 및 무전취식, ㉑물품강매·청객행위, ㉒광고물 무단부착, ㉓길행위, ㉔동물등에 의한 행패, ㉕출판물 부당게재, ㉖거짓광고, ㉗업무방해, ㉘암표매매

- □□

□□

□□

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

- □

□

☞ (참고) 경찰청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입법예고〉제2012-30, 31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, 규칙 입법예고

<2013년도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>

▸ :

▸

① ,

② , ,

③ ,

▸ : 2013.3.22. (「 」)

8. 보훈 · 국방

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

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
(☎ 02-2020-5179)

□□ ·

□□□□□ □□□ □

- □ □□ □
□□□ □□□ □□
□

- □□ ·
□□ □
□□□ □ □

□□ □ □ □□ □
□□□ · □□ □ □□□ □ □
□

☞ (참고) 국가보훈처 홈페이지〉보훈지원〉보훈급여금〉2013년 보훈급여금 지급액

<2013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>

▸ :

▸
① 2012 4%
- · 2%
②
(15~45% → 20~60%)
③
2 (18 → 20 ,
12 → 14)

▸ : 2013.1.1.

※ '12.12.28

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지정

국방부 경영분석담당관
(☎ 02-748-5380)

군 책임운영기관

-

-

-

☞ 국방부 홈페이지>국방미디어>보도자료> '13년 軍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
☞ 국방부 홈페이지>국방미디어>보도자료>2011년 군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실시

<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확대>

▶ : ,

▶

① , 3 ,

※ 2012년 현재 군 책임운영기관(14개)
국군인쇄창, 국군수도병원, 국군대전병원, 국군의학연구소, 육군2보급단, 육군3보급단, 육군항공기정비단, 육군특수무기정비단, 해군보급창, 해군1함대정비대대, 해군2함대정비대대, 공군40보급창, 공군82정비창, 공군83정비창

▶ : 2013.1.1.

평시 예비역 장교·부사관의 현역 재임용

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
(☎ 02-748-5121)

□□ □

□~□

□

- □ □□

□□

□

- □ □□

□□ □□

. □

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

□

<평시 예비역 장교·부사관의 현역 재임용>

▶ :

, ,

,

▶

① 3 .

② .

③

▶ : 2013.6.

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

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
(☎ 02-748-5107)

□□

□□

• ‘ ’

□□ ‘

’ ‘

’

□

• □ .

□

□□ □□ □

□

<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>

▶ :

▶ :

▶ : 2013.2. ( )

※

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

국방부 인력관리과
(☎ 02-748-5135)

□□

□□

□

• □ □

□

• □ □ □□

□ □

□

<병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>

▶

(:)

구 분	이등병→일등병	일등병→상등병	상등병→병장	병장→전역
현 행	5	6	7	3 (해군 5, 공군 6)
조 정	3 (-2)	7 (+1)	7	4 (해군 6, 공군 7) (+1)

▶ : 2013.1.1.

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

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
(☎ 02-748-5173)

□□ .

□ □

□□ □

□

* 3자녀이상 여군의 셋째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 면제

□□ .

□

* 제출서류 : 군의관 소견서와 소속지휘관 확인서 ⇨ 군의관 소견서(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소견서), 출생증명서, 소속 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하여 제출

<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>

▶ : .

▶

① 3

② / ( )

* 제출서류 : 군의관 소견서(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), 출생증명서, 소속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

▶ : 2013.1

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

국방부 예비전력과
(☎ 02-748-5245)

□□

□□

- □□ □□ □□
□□
□

- □□
‘ ’ □□ □□
□

<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>

▶ :

▶
①

▶ : 2013.1.1.

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

국방부 예비전력과
(☎ 02-748-5245)

□□

•

•

<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>

▶ :

▶

① ,

※ 종전에 비해 일요일 훈련 비중도 증가

▶ : 2013.1.

연대급 통합예비군 훈련장 시험 운영

국방부 예비전력과
(☎ 02-748-5241)

□□ □ □

□

□ □□

• □□□□ □

□ □□

□□ □ □

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

□□□□

□□

• □

□□

□□

<연대급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 운영>

▸ :

,

1

▸

① : 56

( )

② : 3 (, ,)

③ : 2013 ~2015

▸ : 2013.

병 봉급 인상

국방부 복지정책과
(☎ 02-748-6613)

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

•

□□

□□

<병 봉급 인상>

▶ :

▶ : 2012 15%

(:)

구 분	계급	2012년	2013년	증액
병 봉급 인상(15%)	이등병	81,500	93,700	12,200
	일등병	88,000	101,200	13,200
	상등병	97,500	112,100	14,600
	병장	108,000	124,200	16,200

▶ : 2013.1.1.(,)

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

국방부 복지정책과
(☎ 02-748-6613)

□□□□□□

□□

•

□□

□□

□□

□

<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>

▸ :

▸

① 10% (: 15,000 → 16,500)
② 10% (29,700 → 32,700)
③ (→
)

▸ : 2013.1.1. (,)

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

국방부 보건정책과
(☎ 02-748-6655)

□□

□

• □□□□
□□□□
□ □ □

□□ · □
□□

□□

□

<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>

▸ : ‘12～’ 16 「
」

▸
① · 3
②

▸ : 2013.1.1.

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

국방부 보건정책과
(☎ 02-748-6648)

□□ □

□

• □□□□ □ □

□ □

□□□□ □ □ □

□□

• □□

□ □□

<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>

▶ :

▶

① · : 2012 1 ~ 2013 6

* 노선 : 고양 4개, 홍천 3개

② · · · , 2 : 2013 7 ~

* 노선 : 양주 4, 일동 3, 춘천 3, 강릉 2, 해병2사 1개

▶ : 2013.7.1.

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

국방부 보건정책과
(☎ 02-748-6649)

□□ □□ □

□□□□

□

- □□□□ □

□ □□

□□□□ □□□□□

□ □

□

- □

□

<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>

▸ : A 2012

▸

① 2013 1
A
② 2014
③ 2015 ·

▸ : 2013.4.1.

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

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
(☎ 02-748-5757)

□□ “ ”

□□

•

□□ □□□□ □□ ‘ ’

□□

•

□□

□□

□□ □□ □□□□□□ “ ”

□□□

<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>

▶ : “ ” ,

▶

① , “ ”

②

- 2012 3 ~ :
- 2012 7 ~ :

※ 외관상 군 차량으로 식별가능한 범위 협의 완료

- 2012 9 24 : ( )
- 2012 10 1 ~ :

▶ : 2012.10.1.

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
(☎ 02-2079-6445)

□ □□□□ □ □□ □

•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〉방위사업정보〉법령〉행정규칙

<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>

▶ :

▶

① 「 」, 「 」

▶ : 2013.2. ( )

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
(☎ 02-2079-6445)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〉방위사업정보〉법령〉행정규칙

<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>

▸ :

▸

①「 」

(1%p)

▸ 시행일 : 2013.1.(잠정)

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
(☎ 02-2079-6445)

□□

•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〉방위사업정보〉법령〉행정규칙

<상용품 적용 등을 통한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>

▶ :

▶

① .

20% 5

▶ : 2013.2. ( )

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
(☎ 02-2079-6445)

□□

□ □

- □□□□□□

□□□□□

□

- □□ ‘ ’

□

□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〉방위사업정보〉법령〉행정규칙

<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 ·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>

▶ : ·

▶

① (50%)

② 「 」

5

▶ : 2013.2. ( )

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
(☎ 02-2079-6445)

□□

□

•

□□□□□

□

□□□□ □ □ □

□ □□ □ □□ □

□□□□ □□□□

□

□□ □ □□

□

□□ □ □□

□□□□□ □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〉방위사업정보〉법령〉행정규칙

<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>

▸ :

▸

① (0.5%p)

②

▸ 시행일 : 2013.1.(잠정)

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

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
(☎ 02-2079-6454)

□□

□□ □□□

□

- □ □ □
□□□ □□
□ □
□ □□□
□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〉방위사업정보〉법령〉행정규칙

<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>

▸ :

▸

① 10 2 3
5
50%

▸ : 2013.2.( )

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「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」 개정

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
(☎ 02-2079-6707)

□ □ □□□□ □

□ “ ”□□ □

- □□

□□ □□

□

- □□

□

-

□

□□ □□□

□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〉방위사업정보〉법령

<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>

▸ : ’09

▸

① (·
)

② (
→)

▸ 시행일 : 2013.3.19.

업체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체계 강화

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
(☎ 02-2079-4123)

□ □□□□□ □□

□□

•

□□

•

□□

□

• □□

□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〉방위사업정보〉법령〉행정규칙

<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체계 강화>

▸

① , ,

②

③ .

▸

①

②

③ .

④ .

▸ 시행일 : 2012.12.18.

중앙신체검사소 대구 혁신도시 이전

병무청 징병검사과
(☎ 042-481-2918)

□□

□□□□ □□ □□

□

•

□□□□ □

□□□

□ □

• □□ □□

□ □

□□

□

<중앙신체검사소 대구혁신도시 이전>

▸ :

(2005 6)

▸

① : 384

②

- : 7,885㎡, 5,558㎡(1 , 3)
- : 2011 4 / : 2012 12 17 (: '12.12.21.)

③

- (→
1.5㎞)
- . ,

▸ : 2012.12.21.

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

병무청 징병검사과
(☎ 042-481-2916)

□□

- 「 」

<2013년도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제도 변경 사항>

▶ : 19

▶

① 19

▶ : 2012.12.20.

해양경찰순경(전환복무) 모집 및 선발 업무 해양경찰청 이관

병무청 현역입영과
(☎ 042-481-2738)

□□ □ □ .

□□□□□□

.

□

•

□□

□

☞ (참고) 해양경찰청 홈페이지>뉴스·소식>공지/공고>해양경찰 전경 모집 계획 알림

<해양경찰순경 모집·선발 업무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>

▶ : .

▶

① . (→)

▶ : 2013

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

병무청 현역입영과
(☎ 042-481-2716)

□□

·

□

• □□□□

□□

• □□

·

□

* 다만, 의대 졸업(졸업예정자 포함)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이상의 학력자는 현행과 같이 제외

<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>

▶ :

▶

① ,

·

▶ : 2013.1.1.

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

병무청 산업지원과
(☎ 042-481-2771)

□□

□□□ □□□

□

- □□ □

□□□ □□

□ □□□

□□

□□□□

□

<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>

▶ :

▶

① (200 → 100)

▶ : 2012.12.20.

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

병무청 산업지원과
(☎ 042-481-2771)

□□

□□

□

•

□ □□ □□ □□ □

□□

□□

□

□□ □□

□

<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>

▸ :

▸

① (2 10
→ 15)
② (→
)

▸ : 2012.12.20.

'유학'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

병무청 병역자원과
(☎ 042-481-2965)

□□' '□

□

- ' '□ □□

□

□□ □□ ' '□

□

- ' '□

□□

□ □

<'유학'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>

▸ : 71 ( )
(30 →35) ' '

▸

① ' ' 29
1
~
1

▸ : 2012.12.20.

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 시 허가 취소

병무청 병역자원과
(☎ 042-481-2965)

□□‘ ’□

□

□

- ‘ ’□

□

- □

<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자 허가 취소>

▶ : ‘ ’

▶

① ‘ ’

3

▶ : 2012.12.20.

「병역명문가 찾기」 접수 3월에서 2월로 변경

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
(☎ 042-481-2992~3)

□□□ □ □

- □ □ □
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
□ □ □

☞ (참고) 병무청 홈페이지>공지사항>달라진 '병역명문가 선양사업'

<2013년도 「병역명문가 찾기」 접수시기 조정>

▸ : (6) 「 」

▸

① 「 」 1 (3 → 2)

▸ : 2013.2.

병역명문가, 남성이 없는 경우 군복무 마친 여성 등 포함

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
(☎ 042-481-2992~

□□ □

□

- □□

□

-

□·□□

□

☞ (참고) 병무청 홈페이지>공지사항>달라진 '병역명문가 선양사업'

<2013년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확대>

▶ :

▶ :
①

② , 6·25

▶ : 2013

9. 교육 · 문화(방송통신)

교육감 소속 교육 전문직원의 지방직화

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
(☎ 02-2100-6243)

시·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전면 시행

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
(☎ 02-2100-6243)

□□□□□□ □ □ .

. .

□

• □ .

□

□□ .

□□

□□

□

• ‘ ’ ‘ ’

□□ □□

□

□

•

.

□

<2013년도 총액인건비 시행 주요내용>

▸ ( )

▸ , 5

▸ , 1~2 .

▸ . 4 3·4
, 1 (2) 4

▸

▸ . (4)

5세 누리과정을 만 3-4세까지 확대 시행 ('13.3월)

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
(☎ 02-2100-6556)

□ □□□□□□ □ □□□ □

□

- □□□ □ ‘□□□ ’

□

- □□□□ □

□□

□

- . □□□□ □□□

□

- □□□ □

〈연도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〉

구 분	연령	2012년	2013년
,	5	, 20	, 22 (,)
	4	70%, 17.7	
	3	70%, 19.7	

※ 국·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, ('12년) 5.9만원→ ('13년) 6만원

☞ (참고) 교과부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보도자료〉내년 만 3~4세아도 ‘누리과정(공통과정)’ 도입, 유치원교육 100년만에 확 달라진다

저소득층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

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
(☎ 02-2100-6521)

□□ □□

□

- □ □ □
□□□□ □ □
□□
□ □
□□
□
※ ,
.
- □□
□□ □□□□
□

☞ (참고)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

<2013년도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>

▶ : , ,

▶
①
((父)· (母))
②

▶ : 2013.2.
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

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
(☎ 02-2100-6415)

- [illegible]

- [illegible]

〈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〉

구 분	2011년	2012년	2013년
	40%	70%	100%
1	36 (3)	48 (4)	60 (5)
	1,758	2,880	3,388

교직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선발을 위해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 제도 개선

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팀
(☎ 02-2100-6482)

□□

□□

□

• □□□□ □ □

“□□ ” “□□ ” □□

□□ □□ □’□□□□

□□‘ . ’

.

□□

〈교원양성과정별 교직 적성·인성 검사 실시 횟수〉

교원양성과정 / 대상자	전문대학		4년제	교육대학원	
	2년제	3년제 이상		5학기제 이상	4학기제
2013.3.1	1	2	2	2	1
2013 ( )		1	1	1	

• □ □

□ □ □□ □ □□□□ □□

□ □□ □ □□□□ □□

□ □□□ ‘ □ □’

‘ □ □’□

□□□ □□

□□

□□ □□ □

□□□□ □ □

‘ ’□ □□

□ □ □ □ □

☞ (참고)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보도자료〉임용시험 제도 선진화로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한다.

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

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
(☎ 02-3704-9523)

□□

□□□

- .
□□ □□
□□

- □□ □□
□□

□□ □□
□□

- ‘ ’

‘ ’□ □□

☞ (참고) 문화체육관광부〉알림마당〉보도자료〉11월 18일, ‘예술인 복지법’ 시행, 법을 통한 복지 지원 첫 출발

<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>

▶ :

▶
① .

②
③
④

▶ : 2013.1.1.

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

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
(☎ 02-3704-9406)

□□

□

□□□□ □ □□

* 문화예술교육사의 정의(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5호)
  -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·진행·분석·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(문화예술교육사)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함

- □□□□ □□

□ □ □

□□ . □□ .

□ □

□□

□

- ‘ ’

‘ ’

□

□□ □ □ □□

.

□ □ □□ □□ □

□ □□ □

☞ (참고)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홈페이지

<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>

▶ :

▶

①

(1 2 ,
.)

② 「
」

▶ : 2013.2.18.

유상포인트 및 전자 대금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

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
(☎ 02-3704-9311)

□□ □ □□

□ □ □ ’□□□□□ □

□

- □□

□□

□

- □□

□

□

□

*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 등을 구입·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

☞ (참고)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자료〉훈령·예규·고시

<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>

▶ : ·

* 「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」은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되었으나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어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·시행('12.8월)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
▶

①

②

③

, , · ·

▶ : 2013.2.( )

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

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
(☎ 02-750-2337)

□□□□□□ □

□□ □□

□□□ □

□□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

□□□

□

- □□

□□

□□ □□ □

□□□□ □

* 디지털컨버터는 아날로그TV로 선명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해주는 기기이며, 유료방송사의 셋톱박스와는 다른 제품입니다

〈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신청기한〉

구 분	경남	부산	대전 충남	전북	강원	광주 전남	대구 경북	수도권
	'13.1.4	'13.1.9	'13.1.16	'13.1.23	'13.1.25	'13.1.30	'13.2.6	'13.3.31

※ 기한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(미표시 지역은 2012년에 신청기한 종료)

- □□□ □□

□

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공지사항〉 "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안내"

청각·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'107 손말이음' 개통

방송통신위원회 와이브로활성화팀
(☎ 02-750-2542)

□□ □

□□□□ □

□□□□□ □

•

□ □□ □□ □□□

□□□□□□ □ □

□□□

□□

□□

□□

* 손말과 이음은 각각 수화와 중계를 뜻하는 순 우리말

☞ (참고) 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(http://www.relaycall.or.kr)

< 통신중계서비스 번호 통합 및 명칭 변경 >

▸ :

▸

① 107

② (107)

▸ : 2013.1.1.

700㎒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의 사용 종료

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
(☎ 02-750-2271)

[illegible]

- [illegible]

- [illegible]

※ 계도기간 종료 후 700MHz 대 무선마이크를 이용할 시,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[illegible]

※ 2013년 이후 700MHz 대 무선마이크 수입 · 생산 · 판매 시 생산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,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〉 700MHz 무선마이크 등 주파수 이용 안내

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

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
(☎ 02-750-2244)

□□

•

•

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〉정책/정보센터〉법령정보〉고시〉 "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"

<2013년도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확대 내용>

▸ :

▸

① (→ /)

② (→20㎝

)

▸ : 2013.1.( )

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강화

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보보호팀
(☎ 02-750-2753)

□□

□

•

□□ □□□□ □

□

□□ □□

□□□

□□□

□

• □□

□□

□ □

<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인증 제도 시행>

▶ :

▶

①

② 1,000

③

▶ : 2013.2.

10. 농식품 · 산림

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

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
(☎ 044-201-1553)

□□

“ ” ’□□ ~ ’□□

□

- □ □□ □ □

  * 농어촌주택개량사업, 빈집정비, 전원마을조성사업, 농어촌뉴타운사업,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

  ※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방식등은 ’13년 예산 확정 후 농식품부 홈페이지(www.mifaff.go.kr)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

- □

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농어촌정비법

<농어촌리모델링 시범사업 주요내용>

▶ : ,

▶
① , ,

▶ : 2013.1.1.

※ (잠정) ’12.12.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음

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· 운영

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
(☎ 044-201-1574)

□□ □

□

□

* 2013년도에 전국 국·공립 대학병원, 의과대학, 연구소 등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정 예정

- □

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
<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· 운영 >

▶ :

▶

① · , ,
5 ·

▶ : 2013.1.1.

'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'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

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
(☎ 044-201-1590)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알림마당〉보도자료〉농어촌을 사랑하세요, 기업이 성장합니다.

<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주요내용>

▶ : ·

▶

① ( )

② (,),

, .

▶ : 2013.1.1.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

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
(☎ 044-201-2419)

□□

•

•

* 배달용 돼지고기, 배추김추 중 고춧가루, 살아있는 수산물은 품목 개수로 포함되지 않음

•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알림소식〉보도자료〉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

<2013년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>

▶ : ·

▶

①

② (12 → 16)

③ (→ · ,
→)

④

- ( ) 1/2 → ( )
→ ( ) →
(2)

▶ : 2013.6.( )

※ (잠정) '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' 개정절차 진행중으로 최종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음

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

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 (☎ 044-201-2457)

□

•

”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보도자료〉우리나라 삼계탕 수출 개시

<2013년도 대미 삼계탕 수출 개시>

▶ :

▶

①

▶ : 2013 ( )

※ 미국 내 입법절차(의견수렴, 60일)가 진행중이며,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'13. 2월 말경 최종 확정 공포(30일 이후 시행)

- 의견수렴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법안심사 및 의견수렴 재실시(+150일)

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농어업 관련 지원 우대 확대

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
(☎ 044-201-1535~6)

□□

•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

<2013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강화>

▶ :

▶
① (
)

▶ : 2013.1.23.

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

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
(☎ 044-201-2639)

□□ □□

□

•

□

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

□□□ □ □

•

□□

□□□□ □ “

” “ ”□

□

* 개인능력 : 농어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개발 · 운영, 마을 홍보, 홈페이지 관리, 회계 및 고객관리, 주민교육 등 능력을 갖춘자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고시〉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운영 요령

<2013년도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내용>

▸ : ,

▸

① ( )

- ( ) : 19 65 , : 30 60

→ ( ) · 19

( )

▸ : 2013.1.1.

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완화

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
(☎ 044-201-1737)

- .

- 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〉영농규모화사업, 경지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

<2013년도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>

▶ :

▶
① (60 → 64)
② (70 → 75)

▶ : 2013.1.1.

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('13~'16년)으로 전환하고, 축산업 등록 대상 축종을 확대

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(☎ 044-201-2317)

□□

•

〈축종별 축산업 허가제 도입계획〉

(: ㎡)

규모		기업	전업	준전업	소규모
		'13	'14	'15	'16
		1,200	600 ~1,200	300 ~600	50 ~300
		2,000	1,000 ~2,000	500 ~1,000	50 ~500
		2,500	1,400 ~2,500	950 ~1,400	50 ~950
		2,500	1,300 ~2,500	800 ~1,300	50 ~800

•

* 등록기준 : (현행) 소 300㎡, 돼지 등 50㎡ 초과 사육시설 → (변경) 허가대상 사육규모 미만의 모든 농가
* 등록축종 : (현행) 4종(소·돼지·닭·오리) → (변경) 11종 우제류·가금류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

<2013년도 축산업 허가제 도입>

▸ : ,

▸

① (, , ,)
2013 ~2016 (
1)

②

▸ : 2013.2.23.

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

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
(☎ 044-201-2342~3)

□□

‘ ’ □

•

□□□ □□ □□□

□□□ □

* 지원규모 및 조건(안) : 1,200억원(3%, 2년 상환)

※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(www.mifaff.go.kr)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알림소식〉보도자료〉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

<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(신규)>

▶ :

▶

①

- ( ) : 1,200 (3%, 2)

▶ : 2013.1.1.

※ (잠정) '12.12.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음

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

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
(☎ 044-201-2355)

□□ □

•

□ □

□

□□ □□ □

•

.

□□ .

□□

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지〉알림소식〉보도자료〉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, 한 단계 업그레이드

<2013년도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>

▶ :

,

▶

① 2013 3

* 도서 · 오지 · 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 · 군은 제외

▶ : 2013.1.1.

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

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
(☎ 044-201-2355)

□□

□

•

□□□□ □

□□ ·

□'□□□□□ □'□□□□□ · □'□□□□

□□

•

□□

□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지〉알림소식〉보도자료〉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축산농장에 최초 도입

<2013년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적용 축종 확대>

▶ :

▶

① '13

* ('12) 산란계 → ('13) 돼지 → ('14) 육계 → ('15) 한육우·젖소

▶ : 2013.5. ( )

※ (잠정) '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' 개정 추진 중으로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

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

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
(☎ 044-201-2656)

□□

□□

□

• · □□ · · □

□

• □□

□

* 전국단위의 어선표지판 부착 제도가 2008.1.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, 5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.1.1부터는 전면 시행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

<어선표지판 사용 개선>

▶ :

▶

①

②

- : , ,

▶ : 2013.1.1.

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

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
(☎ 044-201-2643)

□□

□

• □□□□ □□□□

□□

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

□

• □□□□ □□□

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>공지사항>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

<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내역>

▶ :

▶

①

- 50km → 30km

▶ : 2013.1.1. ( )

※ '12.12.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음

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 개편

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
(☎ 044-201-2622)

□□ ‘ ’ ‘ □□
,

□

- □□

□

* 유기수산물 : 항생제·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·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양식수산물

* 무항생제수산물 :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

*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: 유기산 등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(해조류)

-

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

<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시행>

▶ : ·

▶
①

②

▶ : 2013.6.2.

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·어항법 개정

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
(☎ 044-201-2632)

□□

•

□□ □□

•□ □ □□ 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어촌·어항법

<어촌·어항법 개정 항목>

▶ : .

▶

①

② .

▶ : 2013.4.23.

수협중앙회의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

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
(☎ 044-201-2619)

□□

□

•

□□

□□

□□

□

□□

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

<2013년도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>

▸ :

▸

①

②

▸ : 2013.1.1.

서해5도 백령도 대·소청도 주변어장 확장

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
(☎ 044-201-2657)

□□ □

□

•

□□

□

• □□

□□

□□ .

□

□□ □□ □□

□

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어선안전조업규정

<2013년도 서해5도 어장확장 내용>

▶ :

. .

▶

① 연평도 주변어장 조업구역 37㎢확장(764㎢ → 776㎢)
② 'B ' 43㎢ (133㎢ → 176㎢)
③ 'C ' 36㎢ (102㎢ → 138㎢)

▶ : 2013.1.1.

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

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
(☎ 044-201-1858)

□□ . □□

.

□

- ‘□□□
’□ □□□□ ‘□□□□
’ □

- ‘□□□□
’□ ‘□□□’
‘□□□ □ □
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
’□ □

- ‘□□
’ ‘□□□□ ’
□□ ‘□□□ □ □ □□
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
’□ 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·수확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

<2013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범위 완화 항목>

▸ : ( )

▸

① (3% → 10%)

② (20% → 10%,
)

③ (3% → 20%,
)

▸ : 2012.12.6.

친환경 농식품 인증 제도 통합 · 일원화

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
(☎ 044-201-1872)

□□ □□ □□

· □□ □ □

□ · □

□

• □□ □□

□

• ·

□ □□□ 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<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·일원화>

▸ : ·

·

▸

① 「 · 」

② (, ,

)

③

▸ : 2013.6.2.

비료 생산·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 기재 의무화

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
(☎ 044-201-1882)

□□ .

- □ □

- □□ □

□

□

□□

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비료관리법 시행규칙

<비료 생산·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>

▶ :

▶

① .
(3)

② (
)

▶ : 2013.4.23.

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

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
(☎ 044-201-1654)

- ‘
  ’
  ‘
  ’

  *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: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제도

-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소식>보도자료>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강화

<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주요내용>

▶ :

▶ ① 7 1

(: 5 3)

▶ : 2013.6.2.

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

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
(☎ 044-201-1717)

□□

□

•

□

□□

□

•□ □

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

□

□□ □□ □

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

<「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주요 내용>

▶ :

▶

① 5

②

③ ,

▶ : 2013.1.18.

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

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
(☎ 044-201-1719)

□□ □ □□□□ 「□□□□ 」

. □

* 한 · 미 FTA에 대응하여 정부는 총 24.1조원 규모의 「한 · 미 FTA 보완대책」('08～'17)을 마련 추진

- □□□□

□□

. □

- □□

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<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>

▶

① 90

.

② 5 31

,

▶ : 2013.1.1.

벌채 · 제재 · 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 제도 도입

산림청 목재생산과
(☎ 042-481-8875)

□□ □□ □□

□

•

□ □□

□

□□□□□□ □

□ □

□□ □

☞ (참고)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4조

• □□

□

<목재생산업 종류 및 분야>

▶ :

▶

① · · ·
· ·

② ,

▶ : 2013.5.24.

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지도사) 자격증 발급

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
(☎ 042-481-8869)

□□ □□ □□

□

•

□□ □

□ □'□□□□□□□□

□

□□

□ 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

□

• □□ □

□

☞ (참고)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, 동법 시행규칙 제6조

<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양성기관 지정 >

▶ :

▶

① (, ,)

② ·

▶ : 2013

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 (3→2km)

산림청 산림병해충과
(☎ 042-481-4076)

□□

□□

•

□□□

□

•

□

□□ □□□ □□

<2013년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축소>

▸ :

▸

① (3km → 2km)

▸ ( )

① (3 3)

* '12.12.6부터 시행

②

(7)

* '12.12.9부터 시행

부처별 달라지는 제도

○ 기획재정부 ····· 203
○ 교육과학기술부 ····· 203
○ 법무부 ····· 206
○ 국방부 ····· 207
○ 행정안전부 ····· 210
○ 문화체육관광부 ····· 211
○ 농림수산식품부 ····· 213
○ 지식경제부 ····· 219
○ 환경부 ····· 221
○ 보건복지부 ····· 223
○ 국토해양부 ····· 229
○ 여성가족부 ····· 243
○ 고용노동부 ····· 245
○ 방송통신위원회 ····· 249
○ 국가보훈처 ····· 251
○ 금융위원회 ····· 251
○ 관세청 ····· 252
○ 병무청 ····· 253
○ 방위사업청 ····· 255
○ 경찰청 ····· 258
○ 소방방재청 ····· 259
○ 산림청 ····· 260
○ 중소기업청 ····· 261
○ 특허청 ····· 262
○ 식품의약품안전청 ····· 262

기획재정부

			( )
’12.12.28		, ’13 1	

교육과학기술부

1.	○	○ .	. ('12.11)
			(02-2100-6243)
2. .	○ 2 ( )	○ , , -	
	○ .	○ .	
		○	('13.1)
		○	
			(02-2100-6243)

			( )
3. 5 3-4	〈 · 〉 · 5 : · 5 · 3,4 ㄱ : ㄴ : 〈 〉 · 5 : · 3,4 : 70% 〈 〉 · · 3~5 5.9 (,) · · 5 20 · 4 17.7 · 3 19.7	〈 · 〉 · 3,4,5 : · 3-5 · 3,4,5 : 〈 〉 - 3~5 6 (,) 〈 〉 · - 3~5 22	, ('13.3.1.) (02-2100-6556)
4.	○ ( ) ○	○ ( ) ※ 온라인 신청 시, 부(父)·모(母)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○ ☞ (참고)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	· ('13.2.) (02-2100-6521) (02-739-3744)
5.	○ : 40% ○ : 1 36 (3)	○ : 70% ○ : 1 48 (4)	- (02-2100-6415)

			( )
6.	○ 100 75	○ - , 100 75 - , 100 80	('13.3.1.)
	○	○ ( ) ‘ . ’	(02-2100-6482)
	○ : 3 - (1) , - (2) , - (3) , ○ : 3 - (1) , - (2) - (3) ,	○ : 2 (2012) - (1) ( ), ( ) - (2) , ※ 유치원 및 초등특수 포함 ○ : 2 (2013) - (1) ( ), ( ) - (2) , ※ 비교과 및 중등특수 포함	('12.8) ('13) (02-2100-6482)
	〈 〉	○ ‘ ’ ('13.9.1) 3 (5)	('12.8) ('13.9.1.) (02-2100-6482)

법무부

				( )
1.		○ 19 ※ 관련법 :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	○ ※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☞ (참고)법무부인권국홈페이지>알림마당>인권관련뉴스>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미!!법률조력인	('13.6.19) (02-2110-3648)
2.		〈 〉	○ . ☞ (참고)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>알림마당>인권관련뉴스> '진술조력인 제도 도입!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전면적 확대!'	('13.6.19) (02-2110-3852)
3.	1	○	○ ○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	('13.7.1.) (02-2110-3164)
	2	○	○ ○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	('13.7.1.) (02-2110-3164)

				( )
4.	1	○	○ :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	('13.7.1.) (02-2110-3164)
	2	○	○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	('13.7.1.) (02-2110-3164)
	3	○ 15	○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	('13.7.1.) (02-2110-3164)
국방부				
1.		○ 14 ※ 국군인쇄창, 국군수도병원, 국군대전병원, 국군의학연구소, 육군2보급단, 육군3보급단, 육군항공기정비단, 육군특수무기정비단, 해군보급창, 해군1함대정비대대, 해군2함대정비대대, 공군40보급창, 공군82정비창, 공군83정비창	○ , 3 , 3 ☞ 국방부 홈페이지>국방미디어>보도자료> '13년 軍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	. ('11.8.20.) ('13.1.1.)
2. .		〈 〉	○ 3 .	('13.6.1.) (02-748-5121)
3.		〈 〉	○ -	('13.2,) (02-748-5107)

			( )
4.	○ - : 5 - : 6 - : 7 - : 3 (5 , 6)	○ - : 3 (-2) - : 7 (+1) - : 7 - : 4 (+1) (6 , 7)	('13.1.1) (02-748-5135)
5.	〈 〉	○ 3 -	('13.1.) (02-748-5173)
	○ , ,	○ ( ), ,	('13.1.) (02-748-5173)
6.	○ :	○ : ,	('13.1.1) (02-748-5245)
7.	○ , 1~2	○ ,	('13.1.1) (02-748-5245)

			( )
8.	○	○ - 13 ~15 1 * 서울특별시 3개구(광진, 성동, 동대문) 예비군 대상 / 56사단 금곡 예비군 훈련대	- '13. (02-748-5241)
9.	○ 81,500 88,000 97,500 108,000	○ (15%) 93,700 (12,200) 101,200 (13,200) 112,100 (14,200) 124,200 (16,200)	('13.1.1.) (02-748-6613)
10.	○ - * 갑지역 : 15,000원 * 을지역 : 12,000원	- * 갑지역 : 16,500원 * 을지역 : 13,200원	('13.1.1.) (02-748-6613)
	○ ( ) - : 29,700	- : 32,700	('13.1.1.) (02-748-6613)
	○ -	-	('13.1.1.) (02-748-6613)
11.	○	○	('12.9.22.) ('13.1.1.) (02-748-6655)

							( )
12.		○ ,		○ 6 (, , , , ,) 2			('13.7.1.) (02-748-6648)
13. A		○ ,		○ 13 1 ○ 14 , 15			('13.4.1.) (02-748-6649)
14.		○		○ - :			('12.9.14.) ('12.10.1.) (02-748-5757)
행정안전부							
1.	1		10%			10%	('13.1.)
			20%			40%	
						20%	
						40%	
			1 0.03%				
			-	· ( )		10%	
			80%				
			10%				
		I ( )	10%				(02-2100-3916)
		II ( )	30%				
			10%				
			1 0.03%				
	2		10%	( )		5%	
				( )		1 0.03%	

				( )
2.	1	○ - : 75% - : 50%	○ - 75%	('13.1)
	2		○ 2 50%	
	3	○ 2012 - 140	○ 2015 - 140	(02-2100-3926)
	4	○ 2012 , - ( ) 60㎡. - ( ) 40㎡ 40~60㎡ 50% 60~85㎡ 25%	○ 2015 , - ( ) 60㎡. - ( ) 40㎡ 40~60㎡ 50% 60~85㎡ 25%	
문화체육관광부				
1.		〈 〉	○ . ○	('12.11.8.) ('13.1)
			○ ○ > > >11 18 , ‘ ’ ,	(02-3704-9523)

			( )
2.	〈 〉	○ , (27 2) - 1 2 , . (16 2) ○ 「 」 (2)	○ (27 2 / '13.2.18) ○ (16 2 16 3 /'13.2.18) ○ (2 /'13.2.18) (02-3704-9406)
3. , 1	〈 〉	○ , , , ,	('13.2 ( ))
2	〈 〉	○ , - , , - , ,	(02-3704-9311)
3	〈 〉	○ , , . .	
4	○ 24%	○ 20%	

농림수산식품부

			( )
1.	○ - ·	○ ○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농어촌정비법	('13.1.) (044-201-1553)
2. ·	〈 〉	○ · , 5 ·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	('13.1) (044-201-1574)
3.	〈 〉	○ ( ) , ○ ,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농어촌을 사랑하세요. 기업이 성장합니다.	('13.1.) (044-201-1590)

			( )
4.	○ : 98% 2 ○ 〈12 〉 . . ( ), , , , , , , , , ○ - : 1/2 - : - : - :	○ : ○ 〈 12 + 4 〉 ( ), , , , , , ○ - : - : - : - :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	('13.6.) (044-201-2419)
5.	○	○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	/ (044-201-2457)
6.	○ :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	○ :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	('13.1.) (044-201-1535)

			( )
7.	○ : 19 65 ○ : 30 60	○ · 19 ( )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고시>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운영 요령	('13.1.) ('13.1.) (044-201-1588) (044-201-2639)
8.	○ : 60 ○ : 70	○ : 64 ○ : 75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>영농규모화사업, 경지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	('13.1.) (044-201-1737)
9.	○ ○ , , 300㎡, · · 50㎡	○ , , (, , ,) ○ , , , , 15 · · · · · ·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고시>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	('13.2.) (044-201-2317)

			( )
10.	〈 〉	○ (3%, 2) ☞ (참고)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	('13.1.) (044-201-2342)
11.	○ ·	○ · ·	('13.1.1.) (044-201-2355)
12. ,	○	○ ☞( ) 〉 〉 〉	('13.5.) (044-201-2355)
13. ,	○ · , · · ○ ,	○ ○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 요령	('13.1.1.) (044-201-2656)
14.	○ 50km 49	○ 30km (49)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>공지사항>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	· ('13.1.1.) (044-201-2643)

			( )
15.	○	○ ○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	· ('13.6.) (044-201-2622)
16.	○ · · ○	○ ○ · ·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어촌·어항법	('13.4.) (044-201-2632)
17.	〈 〉	○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	('13.1.) (044-201-2619)
18. 5 , ·	○ 764㎢ ○ B 133㎢ ○ C 102㎢	○ 776㎢ ○ B 176㎢ ○ C 138㎢ ○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어선안전조업규정	('13. 1.) (044-201-2657)

			( )
19.	○ : 3% ○ : 20% ○ : 3%	○ :10% ○ :10%( ) ○ :20%( )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·수확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	, ('12.12.) (044-201-1858)
20. .	○ , - - -	○ . ○ , , ○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	. ('13.6.2) (044-201-1872)
21. ·	〈 〉	○ · ○ ( )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비료관리법 시행규칙	('13.4.) (044-201-1882)
22.	○ - 5 3	○ - 7 1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소식>보도자료>식물신품종 육성자권리강화	('13.6.2.) (044-201-1654)

			( )
23.	〈 〉	○ ○ ○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	('13.1.) (044-201-1717)
24. FTA	〈 〉	○ FTA * 성과분석(5월말), 투융자계획(9월말)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	('13.1) (044-201-1719)
지식경제부			
1.	1	○ , 11	○ ,	('12.12.) (02-2110-5302)
	2	○	○ 2 ☞ 법제처>법령통합검색('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' 입력)>시행예정법령 보기	('13.3.) (02-2110-5302)

				( )
2.	1	○ · , LMO	○ ○ ,	('13.12.)
	2	○ ,	○ ○ ,	
	3	○	○	(02-2110-5661)
	4	○ (36) · , ,	○ · , , ○ ☞ (참고)국가법령정보센터 >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	

			( )
3.	○ 20%	○ 25% ☞ (참고)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>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[대통령령 제24201호, 2012.11.27, 일부개정]	('12.11.27.) (02-2110-5495)
4.	○	○ . ☞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> 제품안전기본법 [시행2012.8.24], [법률 제11437호, 2012.5.23. 일부개정]	('12.8.24.) (02-509-7238)
5.	○ .	○ , , , .	('12.11.6.) (02-2195-1115)
환경부			
1.	○ 17 ○ BOD, COD	○ 20 ○ BOD, TOC(Total Organic Carbon)	('13.1.) (02-2110-6822)
2. 「 」	〈 〉	○ ☞ (참고)환경부 홈페이지>알림홍보>보도·해명자료>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제정·공포	('13.9.) (02-2110-6960)

			( )
3.	○ ,	○ , , 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법령정보>입법·행정예고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	('13.2.) (02-2110-6859)
4	○ 2	○ 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법령정보>입법·행정예고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	('13.2.) (02-2110-6859)
5.	○	○ , 2 Tier-3 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·홍보>보도자료> 농업기계 배출가스, 2013년 2월부터 단계적 규제 시행	('13.2.) (02-2110-6809)
6. 1	○ /	○ /	('13. 2) (02-2110-6778)
2	○ (PM10)	○ (PM10) ☞ (참고)시범사업 이후 초미세먼지(PM2.5) 및 오존으로 점차 확대	(, '13.2.~) (02-2110-6778)
3	○ (, '06)	○ ( )	(, '13.2.~) (032-560-7344)

				( )
7.		○	○	('13.1.) (02-2110-6943)
보건복지부				
1.	1 ( )	○ 50%	○ 5%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	('13.1.) (02-2023-7426)
	2 (TS-1)	○ 100%	○ 5%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	, ('13.1.) (02-2023-7426)
	3	○	○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	, ('13.10.) (02-2023-8756)
	4	○	○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	, ('13.10.) (02-2023-7413)

				( )
2.	1 Hib	○	○ - : - : 1 5 ☞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	('13.3) (043-719-7369)
	2 65	○	○ : ☞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	('13.5) (043-719-7369)
3.	1	○ 107	○ 144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	[2] ('13) (02-2023-8257)
	2	○ 72 / (6)	○ 5 /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	('13) (02-2023-8257)
4. PC		○ 1/2	○ PC	('13.6.) (02-2023-7848)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td></td><td>(　　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5.</td><td>1
100g</td><td>○
○</td><td>○
○　　100</td><td>('13.1.1)</td></tr>
<tr><td>2</td><td>○</td><td>○ 150　　·</td><td>(02-2023-7785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6.</td><td>1</td><td>○ ' 12
-　　: 55.1
-　　: 88.1</td><td>○ ' 13
-　　: 58
-　　: 92.8</td><td>('13.1.1)
('13.1.1)</td></tr>
<tr><td>2
2</td><td>○
-(18~64) 6
-(65) 15
○　　: 5
○
-(18~64) 0
-(65) 2</td><td>○
-(18~64) 8
-(65) 17
○　　: 7
○
-(18~64) 2
-(65) 4</td><td>(02-2023-8672)
(02-2023-8654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7.</td><td>1
○ 1</td><td>○ 2
☞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</td><td>('13.1)</td></tr>
<tr><td>2
【 (18)】
<table>
<tr><th>활동지원 등급</th><th>인정 점수</th><th>기본 급여</th></tr>
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60,000원</td></tr>
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690,000원</td></tr>
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
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
</table>
【 (6 ˜18)】
<table>
<tr><th>활동지원 등급</th><th>인정 점수</th><th>기본 급여</th></tr>
<tr><td>1등급</td><td>320점~ 445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
<tr><td>2등급</td><td>220점~ 31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
</table></td><td>【 (18)】
<table>
<tr><th>활동지원 등급</th><th>인정 점수</th><th>기본 급여</th></tr>
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86,000원</td></tr>
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711,000원</td></tr>
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36,000원</td></tr>
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61,000원</td></tr>
</table></td><td>('13.1)
(02-2023-8204)</td></tr>
</table>

			( )
7.	○ , **구 분 / 추가급여 / 구분 / 추가급여** 최중증 1인가구 664,000 / 출산 가구 664,000 중증 1인가구 166,000 / 학교 생활 83,000 중증 장애인 가구 83,000 / 직장 생활 83,000 취약 가구 83,000 / 자립 준비 166,000	○ , **분 류 / 추가급여**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/ 684,000원 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/ 171,000원 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~2급장애인,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/ 684,000원 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~2급 장애인, 6세 이하,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/ 171,000원 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/ 684,000원 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/ 171,000원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/ 86,000원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/ 86,000원 ⑨ 가족(실질적 보호자)의 결혼, 출산,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/ 171,000원	(02-2023-8664)
	○ **분 류 / 금액(원)**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/ 8,30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/ 9,300 ③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/ 9,300	○ **분 류 / 금액(원)**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/ 8,55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/ 10,260 ③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/ 10,260	
	○ - : 1 4,000 - : ·	○ - : 1 6,000 - : · ·	

			( )
8.	-	○ ※ 등록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	('13.1.27.) (02-2023-8184)
9.	○ 100% (31) - '12 : 48,111	○ 150% (40) - '13 : 57,811	- (02-2023-8667)
10.	-	○ · - ( ) , , , , · , ○ · - ( ) 30 ○ · - ( ) ,	('13.4.11.) (02-2023-8640)
11.	○ 1 ~3 : 180 (300) ○ 4 : 100	○ 1 ~4 : 180 (300)	('13.1) (02-2023-8483)

			( )
12. 3~5 숯	○ 5	○ '13 3 3~5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정책소개>영유아 보육>3-5세 연령별 누리과정	('13.3) (02-2023-8926)
13.	○ 1,495,550 (4)	○ 3.4% 1,546,399 (4)	('13.1)
	○ 4.17%	○ 1.04%	
	○ 133 108.5 101.5	○ 228 136 116	
	○ 3 ※ 100인 미만, 100인 이상~ 300인 미만, 300인 이상	○ 30 9.5% (5.3%)	(02-2023-8128)
	○ (, ,)	○	
	○ 30%	○ 30%	
	○ 1 50	○ 1 75	

				( )
국토해양부				
1.	1	○ ·	○ - , , , ○ ○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	('13.1.1.) (044-201-3424)
	2 ·	○	○ (, ,) (, ,) ,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	('13.) * (044-201-3424)
	3	○ (100%)	○ · (30%) (70%)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 도입	('13.1.1.) (044-201-3424)

				( )
2.		○ ○ 2012 3 4 (, , ,)	○ ( ) , ( ), , , , , ○ * 2013년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종합증명서 전국 확대 실시 서비스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	· ('13.8) (044-201-3480)
3.		○	○ (PPLIS) , , * PPLIS(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,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	('13.9) (044-201-4651)
4.	1	○ · : 4.0% ○ : 4.2% ○ · : 5.2%	○ · : 3.7% ○ : 3.8% ○ · : 4.3%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	('12.12.21) (044-201-3338)
	2	○ 1 : 2.5% ○ 1 2 : 3.5% ○ 2 : 4.5%	○ 1 : 2.0% ○ 1 2 : 3.0% ○ 2 : 4.0%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	「 」 ('12.12.21) (044-201-3338)

			( )
5.	○ · : 3 (3 5) ○ : 5 ○ · : 3 (4)	○ · : ( ) 4 (4 5) ○ : ( ) 5 5 ○ · : ( ) 4 (5) 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	('13.1.) (044-201-3338)
6. ·	○ · - 60㎡ + 5 + 10	○ · - 60㎡ + 7 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「 」(2013.1) (044-201-3338)
7.	○	○ ‘ , , , , 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「 」(2013.1) (044-201-3338)
8.	○	○ 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「 」(2013.1) (044-201-3338)

			( )
9.	〈 〉	○ 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	('13.1) (044-201-3369)
10. ,	○ 500 . ○ 2 , 4	○ 500 . ( ) ○ (, 2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유 크게 확대	('13.1) (044-201-3369)
11.	○	○ ☞( ) > > > 22	('13.7) (044-201-3367)
12.	○	○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	('13.7) (044-201-3367)
13.	○ 2006.9.25 (2009.7.1)	○ 2014.12.31 (, 4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,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	('12.12.18) (044-201-3392, 3386)

				( )
14. · PDF		○ (CAD)	○ PDF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등산로·자전거길 "나만의 맞춤지도" 만든다.	('13. 6) (031-210 -2720)
15.	1 ,	○ 30 ○ 10 30 ○	○ ○ 20 ○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	, ('13.1 , 4) (044-201-3581)
	2 PQ (2 →4)	○ ○ (2)	○ , ○ (2~4) - 20 2 , 20 ~30 3 , 30 4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	('13.4) (044-201-3501)

				( )
16.	1	○	○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	('13.1)
	2	○	○ 70% - 20~50%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	(044-201-3581)
17.	1	○	○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	('13.1)
	2 .	○	○ . . . .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	(044-201-3577)
	3	○	○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	

					( )
18.		〈 〉	○		('13)
				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	(044-201-3689)
19.		○	○		
				20 5	('13.1.1.)
		20			
				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	(044-201-3691)
20.		○	○ 12.5		
			25 P		('13.1.1)
				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	(044-201-3691)
21.		〈 〉	○		
				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	('13.9.11)
					(044-201-3691)
22.	1	〈 〉	○ ,		

				( )
28.		〈 〉	○ 2013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	('13.1) (044-201-3851)
29.		○	○ - 50%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	('13.1.1) (044-201-4602)
30.		○ 5 -	○ 20 (1) - ☞( ) > > >	('13.6) (044-201-4177)
31.	1 ·	○	○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만법	('13.6)
	2	○ · - 20	○ 20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만법	(044-201-4145)
	3	-	○ ·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만법	

				( )
32.	1	○ 1	○ 200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	('12.12) (044-201-4003)
	2	○ 30	○ 60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	
	3 · , , ,	○ 15	○ 30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	
	4	○ 6	○ 1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	
	5	○ 15	○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	

			( )
33.	-	○ ○ . ○ . ○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	('13.6) (044-201-4007)
34.	-	○ ( 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	('13.7) (044-201-4007)
35. .	-	○ . (1 3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	('13.7) (044-201-4007)
36.	-	○ ○ 2012 ('13.1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	('13.1) (044-201-4011)

<table>
<tr><th></th><th></th><th></th><th>( )</th></tr>
<tr><td>37. ,</td><td>〈 〉</td><td>○ ,

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</td><td>('13.1)

(044-201-4018)</td></tr>
<tr><td>38.</td><td>○ 20
, 10
. ,
65
(
39)

.
○ 500

(

)</td><td>○ . ,

.

※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필요

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</td><td>4
('13.1.1.)

(044-201-4022)</td></tr>
<tr><td>39. ·</td><td><table><tr><th>A급</th><th>B급</th><th>C급</th><th>D급
(또는
옥상헬기장)</th></tr><tr><td>90M
이상</td><td>90M
미만
40M
이상</td><td>40M
미만
15M
이상</td><td>항공기 기체 길이의 1.2배로서 최소 15M
이상</td></tr><tr><td>30M
이상</td><td>20M
이상</td><td>15M
이상</td><td>항공기 기체폭의 1.2배</td></tr></table></td><td>○ 1.2
15m
☞ ( ) > >
></td><td>('13.1)

(044-201-4349)</td></tr>
</table>

				( )
40.		○ · (Shoulder)	○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규칙	('13.1) (044-201-4349)
41.	1	○	○ 15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연재해대책법	('13.1) (044-201-4350)
	2	○	○ 15 , , ,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연재해대책법	
42.		○	○ 「 」, 「 」 .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규칙	('13.2) (044-201-4355)
43.		-	○ (3 100%, 2 50%) ○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	('13.3) (044-201-4377)

			( )
44.	○ ('10) - : 3.8mg/L - : 0.074mg/L ○ ('10) - : 7,761.7kg/ - : 203.11kg/	○ : (3.3mg/L), (0.065mg/L) ○ ('17) - : 7,241.3kg/ - (193.00kg/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시화호 총량관리 시행	('13.7) (044-201-4422)
45. (6)	< > 1 < > 1 1 < > 1 「 5 - - . (好氣性)· (嫌氣性) (「 」 4 2 10)	< > < > < >	[6] ('13.1) (044-201-4427)

여성가족부

			( )
1.	〈 〉	○ · , , , , . “ ” (’ 12.12.17) ☞ (참고)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	(’12.8) (’12.12.17.) (02-2075-8613, 8617)
2. ·	〈 〉	○ · ○ 100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‘청소년기본법’	(’13.1.1.) (02-2075-8614)
3.	○ 5	○ 7	(’13.1.1) (02-2075-8713)
4.	○ , ,	○ , ,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	(’13.6.19) (02-2075-8766)
5.	○ 19 ○ ○ 〈 〉	○ , , : (’12.10.25.) 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소식>보도·해명>보도자료> ‘성폭력피해자 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’ ○ ‘ ’ : ’ 13.6 ○ : ’ 13. 6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	(/’13.6.19) (02-2075-8768)

			( )
6. · .	o (,)	o	·
	o - : 5 - : 3 - : 1 , 5 ~2 - · : 5 - : 2 - : 5 , 3	o - : 5 - : 5 - : 2 , 1 ~3 - : 5 - : 1 , 2 - :1 ~10 , 2 ~5	('13.6.19)
	o : 13 ,	o : 13 ,	
	o : 3 ~ 11	o : ·	
	o	o	(02-2075-8783)
	o · : , , , ,	o · : - ( ) · · → ( ) · · - , (PC), ,	
	o · · - · : - :	o · · - : - · :	
	o :	o : , , , ,	
	o : · ·	o : ☞ (참고)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·소식>보도자료>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 통과	

고용노동부

			( )
1.	○ 2 (,)	○ 17 (① · , ② , ③ , ④LED , ⑤ , ⑥ ⑦ , ⑧IT , ⑨ , ⑩ · , ⑪ ( ). , ⑫ , ⑬ · ⑭ ⑮ ⑯ ⑰MICE·) ○ (U)	('13.1) (02-6902-8474)
2.	○ 6 2 ○	○ 3 4 ○	('13.1) (02-6902-8474)
3. ( )	○ 1 90%, 2 80%, 3 70%	○ 1 90%, 2 70%, 3 50%	( ) ('13. 1) (02-2110-7172)
4.	○ 4	○ 5 (,) ☞ (참고)www.work.go.kr/intern/	2013 ('13.1) (02-2110-7178)

			( )
5.	○ 15%	○ 100 15% ○ 100 300 10% + 5 ○ 300 5% + 20 ☞ (참고)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죈다	, ('12.12) (02-2110-7306)
6.	○ '12 : 590,000	○ '13 : 626,000 ☞(참고)전자관보(http://gwanbo.korea.go.kr)>관보 구분별 보기>고시(12.14예정)	, ('13.1) (02-2110-7313)
7.	○ 1/2	○ 3/4	,
		○ 1/2 3/4 + 1/4 ☞(참고)전자관보(http://gwanbo.korea.go.kr)>관보 구분별 보기>고시(12.14예정)	('13.1)
	○ 1/2 + 1/2	○ 1/2 + 1/2	(02-2110-7313)
8.	○ (200)	○ (100)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	('13.1) (02-2110-7313)

			( )
9.	-	○ 1~2	('13.1) (02-2110-7307)
10.	-	○ ( )	('13.1) (02-2110-7310)
11.	-	○ ' ' , , ( ), , * 서비스내용: 직업설계컨설팅, 직업훈련체험, 직업훈련기관 연계, 구직역량강화, 현장체험, 학부모설명회, 장애인식개선 등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장애학생,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	('13.1) (02-2110-7307)
12.	○ 50% ○ 50%	○ 15 30 ○ 30%	('13.1) (02-2110-7305)
13.	○ 4,580	○ 4,860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내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4,860원으로 결정	('13.1.1) (02-2110-7399)
14. 4	○ 100 50	○ 100 100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팜플렛브로셔	('13.1.1.) (02-2110-7420)

			( )
15.	○ '10~'12	○ ○ - ( ) (100) (30) - , , . - ( ) , ( ) ☞ (참고) 「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(http://kras.kosha.or.kr)」('13.1.1. 오픈 예정)	('13.1.1.) (02-6922-0913,0914)
16.	○ , , , , , , ,	○ , , , , , , , , , ( ) ☞ 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·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	28 ('13.3) (02-6922-0935)
17.	○ , ,	○ , , , , , , , , , , ☞ 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·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	28 5 ('13.3) (02-6922-0935)
18.	○ 2013	○ - : 10 - : 1 ○ : 2013 1	('13.1) (02-6922-0951)

			( )
19. ·	○ 2013	○ · .	, ('13.1)
		☞ 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 관한고시(고시 제2012-9호)	(02-6922-0953)
20.	○ , 18 ○ , 60	○ , 19 ○	('12.12.18)
		☞ 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최근 제개정 법률	(02-2110-7219)
21.	○	○ 2	('12.11.18)
		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	(02-2110-7223)
방송통신위원회			
1. TV	○ TV	○ TV , TV ※ 아날로그방송종료 : '12.12.31.	, ('13.1.1.)
		☞ (참고)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공지사항> "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안내"	(02-750-2337)

				( )
2.		○ (1599-0042)	○ 107 ○ 『107 』 ☞ (참고)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 (http://www.relaycall.or.kr)	('13.1) (02-750-2542)
3. 700MHz			○ ( ) 740~752MHz 2012 12 31	('13.1) (02-750-2271)
4.	1	○ :	○ : / / / ☞ (참고)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정책/정보센터>법령정보>고시> "전자파인체보호기준 고시"	47 2 ('13.1)
	2	○ :	○ : (20 cm) ☞ (참고)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정책/정보센터>법령정보>고시> "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"	(02-750-2244)
	3	○ :	○ : → , ☞ (참고)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>자료실>법령자료실>무선기기> "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고시"	

			( )
5.	○	○ 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업 정보보호 제도 설명회 개최,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	('13.2) (02-750-2753)
국가보훈처			
1. ※		○ : 2012 4% ○ : 2012 5~15% ○ · : 2012 2 ☞ (참고) 국가보훈처 홈페이지>보훈지원>보훈급여금>2013년 보훈급여금 지급액	('13.1.1.) (02-2020-5179)
금융위원회			
1.	1	○ ( ) ○ : 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위원회소식>보도자료>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위원회소식>보도자료>보험업감독규정 개정	('13.1) (02-2156-9831)
	2	○ 10%	○ 10% 20% ☞ (참고) 상 동
	3	○ 3	○ ☞ (참고) 상 동
	4	○ (:100) * * 보험료 인상폭이 커서 고연령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사실상 불가능	○ ( ) 15 , ☞ (참고) 상 동

			( )
2.	1	○ 18	○ (1~6) ☞ (참고)금융위원회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등 시행	('12.10.15) (02-2156-9856)
	2	○	○ (-) ☞ (참고)상동	
3. 「 」		○	○ 5%	('13.6.12) (02-2156-9475)
4.		○ (CP)	○ (CP) * . * 실물발행 위험, 유통의 불편함, 투자자 보호 미흡 ※ 현행 기업어음증권(CP)제도는 병행 유지 ☞ (참고)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	('13.1.15) (02-2156-9874)

관세청

			( )
1.	○ 3	○ 3	('13) (042-481-7906)

병무청

			( )
1.	○ (43 13)	○ (384) - : 2012.12.21. - - ,	('12.12.21.) (042-481-2918)
2.	○	○ 19	('12.12.20) (042-481-2946)
3.	○ .	○ . ☞ (참고)해양경찰청 홈페이지>뉴스소식>공지/공고>해양경찰 전경 모집계획 알림	('13) (042-481-2738) (032-835-2736)
4.	○ (,)	○ ,	('13.1.1.) (042-481-2716)
5.	○ : 200	○ 100	('12.12.20.) (042-481-2771)

			( )
6.	○ - 2 10 ○ -	○ - 15 ○ -	('12.12.20.) (042-481-2771)
7. ' '	○ ' ' 28 1 ○ 29 6	○ ' ' 29 1 ○ 30 6	('12.12.20) (042-481-2965)
8.	〈 〉	○ 25 1 ' , 3	('12.12.20) (042-481-2965)
9.「 」	○ : 3	○ : 2 ☞ (참고)병무청홈페이지>공지사항>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	('13.2) (042-481-2992~3)
10.	○ 3	○ 6·25 ☞ (참고)병무청홈페이지>공지사항>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	('13) (042-481-2992~3)

			( )
11.	○ - 2 , 1 ※ 동점자, 공동수상자,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공동수상자에 대한 추천기준이 불명확	○ - 2 - 1	('13.1 ,) (042-481-3005)
12.	〈 〉	○	( ) ('13.1.1.) (042-481-3007)
방위사업청			
1.	○	○「 」,「 」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('13. 2) (02-2079-6445)
2.	〈 〉	○「 」 (1%p)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('13. 1월) (02-2079-6445)

			( )
3.	〈 〉	○ . 20% 5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, ('13.2) (02-2079-6445)
4. .	○ 2 ○	○ (50%) ○「 」 5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, ('13. 2) (02-2079-6445)
5.	○ ○ (: 100%)	○ , . (0.5%p) ○ , . , (10%)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, ('13.1월) (02-2079-6445)
6.	○「 」 2 50%	○「 」 2 10 2 3 건기업 중 그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액의 50% 감면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('13.2) (02-2079-6454)

				( )
7. 「 」	1 ·	○	○ (·) -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	('13.3.19) (02-2079-6707)
	2	○	○ ('09.7.31) · · ·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	
	3	○	○ 4 5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	
	4	○	○ · ※ 수수료율 : 판매가의 1/10,000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	

			( )
8.	〈 〉 〈 〉 ○ 〈 〉	○ ○ ○ , . , ○ .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('12.12) (02-2079-4123)
경찰청			
1.	1 ○ 17 - 28 ※ 통고처분 항목은 즉결심판도 가능하나 즉결심판 항목은 통고처분 불가	○ 45 ☞ 통고처분 대상이 되어 적발시 범칙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형사절차 종료	('12.3) (02-3150-1355)
	2 ○	○ 60 , , ○ 10 , , ○ 10 , ,	
	3 ○ ※ 철도특별사법경찰이 현장 억류 후 정차역 인근의 지구대로 인계	○	

소방방재청

				( )
1.	1	-	○ - : 2013. 2.23 - : 2013. 2.23 ~ 8.22 ※ 150㎡ 미만 휴게·일반음식점, 게임제공업 PC방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. 2.23부터	('13.2)
	2 ( )	-	○ ( ) - 1 1 ※ 1사고당 사망자수 무한 - 2 - 1 - 1	(02-2100-5338)
2.	1	○ : 21 30 ○ : 21 30 ○ : 20 30 ○ · : 20 35	○ : 21 40 ○ : 21 40 ○ : 20 40 ○ · : 20 40	('13. 1.1) (02-2100-5316)
	2 과목 변경	○ (5) : , , , ,	○ (3) : , , ○ (2) : , , , , ,	

산림청

			( )
1.	〈 〉	○ · · · · ·	('13.5.24)
			(042-481-4204, 8875)
2. 2	〈 〉	○ - , ,	('13.)
			(042-481-4216)
3	〈 〉	○ - (170), (210), (130)	('12.7.26)
			(042-481-4216)
3.	○ 3km	○ 2km ☞ (참고) 「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」 시행령 제3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7조	('12.12)
			(042-481-4076)

				( )
4.		○ ○	○ , ○ ,	('13.1.1) (042-481-4201)
중소기업청				
1.	1	○ ( ) ○ ○ ○ ○	○ ( ) ○	('13.1)
	2	○ .	○ .	
	3	〈 〉	○ R&D	(042-481-4453)
	4	○ 1	○ (1 ~9)	
2.		〈 〉	○ : , , , , ○ : , , , , , 10 ( ) ○ : (: 1) (80%, 20%) ○ : → · → → → → →	2013 ('13. 1) (042-481-4491)

특허청			
			( )
1.	○	○ · . . 3 30%	('13.1.1.) (042-481-5195)
2. (ATM)	○ : ○ (ATM) :	○ ○ (ATM)	- (042-481-5195)
3.	○	○ ○	('13.1) (042-481-8238)
식품의약품안전청			
1.	○ - : ( ), ( ), ( )	○ - :	('13.1) (043-719-2257)